
민원편람

2023. 7.



부산지방항공청

민원담당자의 자세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분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우리 청에서는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 서류(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포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고객님은 제출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령의 표기에 관한 사항

본 편람의 근거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표기상 편의를 위해
각 「법」, 「영」, 「칙」으로 표기하였음

그 외 관련 법령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약칭으로
표기하였음

예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목 차

I. 민원처리 일반	1
1. 민원의 개념	2
가. 민원의 정의와 종류	2
나. 민원인의 정의	3
2. 민원처리 흐름도	4
3. 민원의 신청 및 접수	5
가. 민원의 신청 방법	5
나. 민원의 접수	5
다. 민원서류의 이송	6
4. 민원의 처리	7
가.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7
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7
다. 민원의 처리기간	7
라. 민원처리의 예외	9
5.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	10
가. 담당자 명시	10
나.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10
다. 처리결과통지의 통지	11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절차	11
II. 관리국	13
III. 안전운항국	17
IV. 공항시설국	113
V. 항공관제국	173

우리 청 소관 민원 사무

연 번	성 격	민 원 사 무 명	담당부서	페이지
관리국				
1	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법적외를받는도로 제외)	관리국	14
안전운항국				
2	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항공안전과	18
3	등록	항공기대여업 등록	항공안전과	24
4	등록	항공기취급업 등록	항공안전과	26
5	등록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항공안전과	28
6	신고	항공기취급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안전과	30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운항과	
7	신고	상업서류송달업 (변경)신고	항공안전과	33
8	신고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항공안전과	36
9	신고/ 인가	운항·정비규정 신고 및 인가	항공운항과 항공검사과	39
10	허가	(경량)항공기조종연습허가	항공운항과	42
11	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항공운항과	45
12	허가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항공운항과	48
13	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허가	항공운항과	51
14	허가	통제구역 비행허가	항공운항과	53
15	허가	물건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운항과	55
16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항공운항과	58
17	허가	곡예비행허가	항공운항과	61
18	허가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운항과	64
19	지정	모의비행장치 지정	항공운항과	67

연 번	성 격	민 원 사 무 명	담당부서	페이지
20	신고/ 인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	항공운항과	70
21	허가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항공운항과	72
22	신고/ 인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	항공운항과	74
23	허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운항 허가	항공운항과	75
24	허가	외국항공기 항행(변경)허가	항공운항과	76
25	허가	외국항공기 국내사용(변경) 허가	항공운항과	79
26	승인	운영기준 변경	항공운항과	82
27	증명	운항증명 및 변경	항공운항과	85
28	검사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항공운항과	90
29	등록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록	항공운항과	93
30	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항공검사과	97
31	증명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항공검사과	100
32	증명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항공검사과	103
33	승인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	항공검사과	107
34	인증	정비조직인증	항공검사과	110
공항시설국				
35	허가/ 승인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국	114
36	기타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국	119
37	기타	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	공항시설과	121
38	기타	비행장설치자 지위승계통보	공항시설과	123
39	허가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공항시설국	125
40	승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국	129
41	승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국	135
42	검사/ 교부	공항시설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항시설국	138

연 번	성 격	민 원 사 무 명	담당부서	페이지
43	허가	공항시설준공 전 사용허가	공항시설국	143
44	신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신고	공항안전과	145
45	허가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공항안전과	147
46	승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공항안전과	149
47	검사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공항안전과	153
48	신고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공항안전과	155
49	허가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공항안전과	157
50	허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	공항안전과	159
51	검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	공항안전과	162
52	기타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	공항안전과	165
53	신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개시신고	공항안전과	167
54	기타	항행안전시설사용의 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	공항안전과	169
55	기타	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 통보	공항안전과	171
56				
56	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항공관제국	174

Chapter

I

민원처리 일반

가. 민원의 정의와 종류(법 제2조 제1호)

1) 민원의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2)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

-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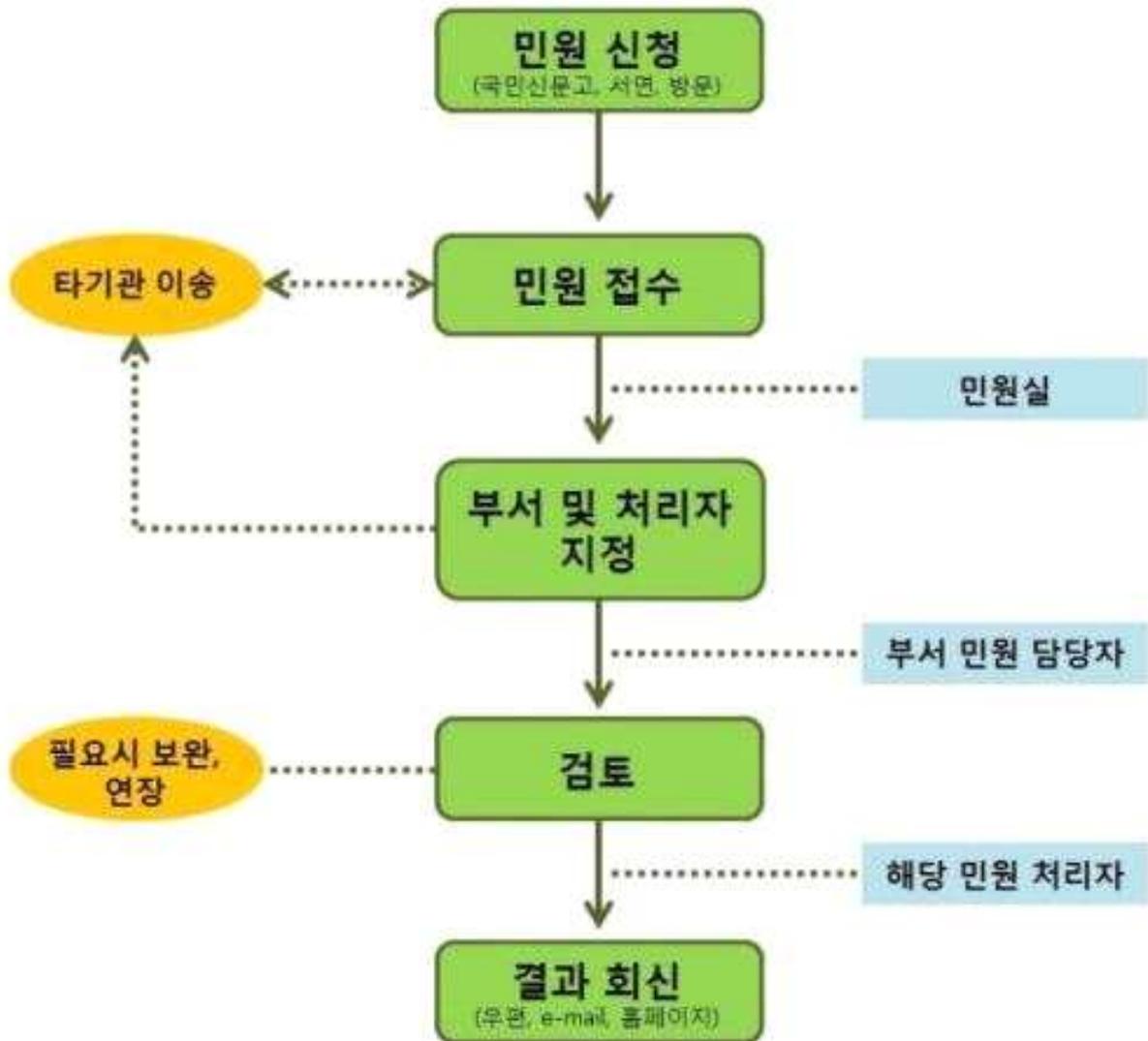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나. 민원인의 정의(법 제2조 제2호)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 제1항)

- ①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 (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
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③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
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가. 민원의 신청 방법(법 제8조)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행정기관의 답변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민원
-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당해 민원 상담자 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내용 등을 즉시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원실은 이를 접수·분류(배정)한다.

나. 민원의 접수

- 1)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영 제6조)
- 2)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 10조)

- 3)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2항)

☞ 접수증을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영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 기타민원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신청한 민원
-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다. 민원서류의 이송

- 1)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1항)
- ※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 2)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2항)
- 3)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
- 4)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영 제13조제5항)

가.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1)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5조제1항)
- 2)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제2항)

다. 민원의 처리기간

1) 질의 민원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영 제14조제1호)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이내(영 제14조제2호)

2) 건의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5조)

3) 기타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6조제1항)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영 제16조제3항)

4)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7조제1항)
-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 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영 제17조제4항)
-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제17조제1항)

라. 민원처리의 예외

-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1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법 제21조제1호)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법 제21조제2호)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법 제21조제3호)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법 제21조제4호)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법 제21조제5호)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법 제21조제6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법 제21조제7호)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법 제21조제8호)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법 제21조제9호)

가. 담당자 명시

-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영 제31조)

나.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1)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 23조제1항)
- 2)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영 제 23조제2항)
- 3)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 23조제3항)

다. 처리결과의 통지

-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9조제2항)

- 기타민원의 경우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 이의신청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시행령 제4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 2)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2항)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시행령 제40조제2항)
- 4)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2항)
- 5)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영 제40조제3항)
- 6)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35조제3항)

Chapter

II

관리국

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유 또는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1호 서식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행정보존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서 1부
- ② 토지등기부등본 1부
- ③ 위치도 1부
- ④ 토지대장등본 1부
- ⑤ 지적도등본 1부

※ ②, ④, ⑤번 서류는 민원처리담당자가 직접 확인(민원인 제출안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국유재산 [] 사용허가 [] 대부 신청서 [] 매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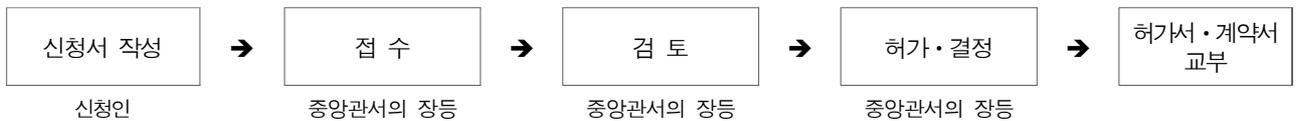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p>신청인 제출서류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 이사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 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p>※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증명해야 합니다.</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Chapter

III

안전운항국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소형항공운송사업, 정비조직인증,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5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내지 제13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별표20) 만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각 1부
- ② 구비서류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계획 및 이행 약속서 1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 (승인된 매뉴얼의 안전 목표·안전조직·안전보고체계·안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규대조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분야 <small>(해당사업 분야 √표시, 복수 신청가능)</small>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형식증명 []</td> <td>부가형식증명 []</td> <td>제작증명 []</td> </tr> <tr> <td>기술표준품형식증명 []</td> <td>부품 등 제작자증명 []</td> <td>정비조직인증 []</td> </tr> <tr> <td>국제 항공운송사업 []</td> <td>국내 항공운송사업 []</td> <td>소형 항공운송사업 []</td> </tr> <tr> <td>항공기사용사업 []</td> <td>국외운항 항공기 []</td> <td>전문교육기관 []</td> </tr> <tr> <td>항공교통업무증명 []</td> <td>공항운영증명 []</td> <td>항행 안전시설 []</td> </tr> </table>		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 []	제작증명 []	기술표준품형식증명 []	부품 등 제작자증명 []	정비조직인증 []	국제 항공운송사업 []	국내 항공운송사업 []	소형 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국외운항 항공기 []	전문교육기관 []	항공교통업무증명 []	공항운영증명 []	항행 안전시설 []
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 []	제작증명 []															
기술표준품형식증명 []	부품 등 제작자증명 []	정비조직인증 []															
국제 항공운송사업 []	국내 항공운송사업 []	소형 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국외운항 항공기 []	전문교육기관 []															
항공교통업무증명 []	공항운영증명 []	항행 안전시설 []															
비고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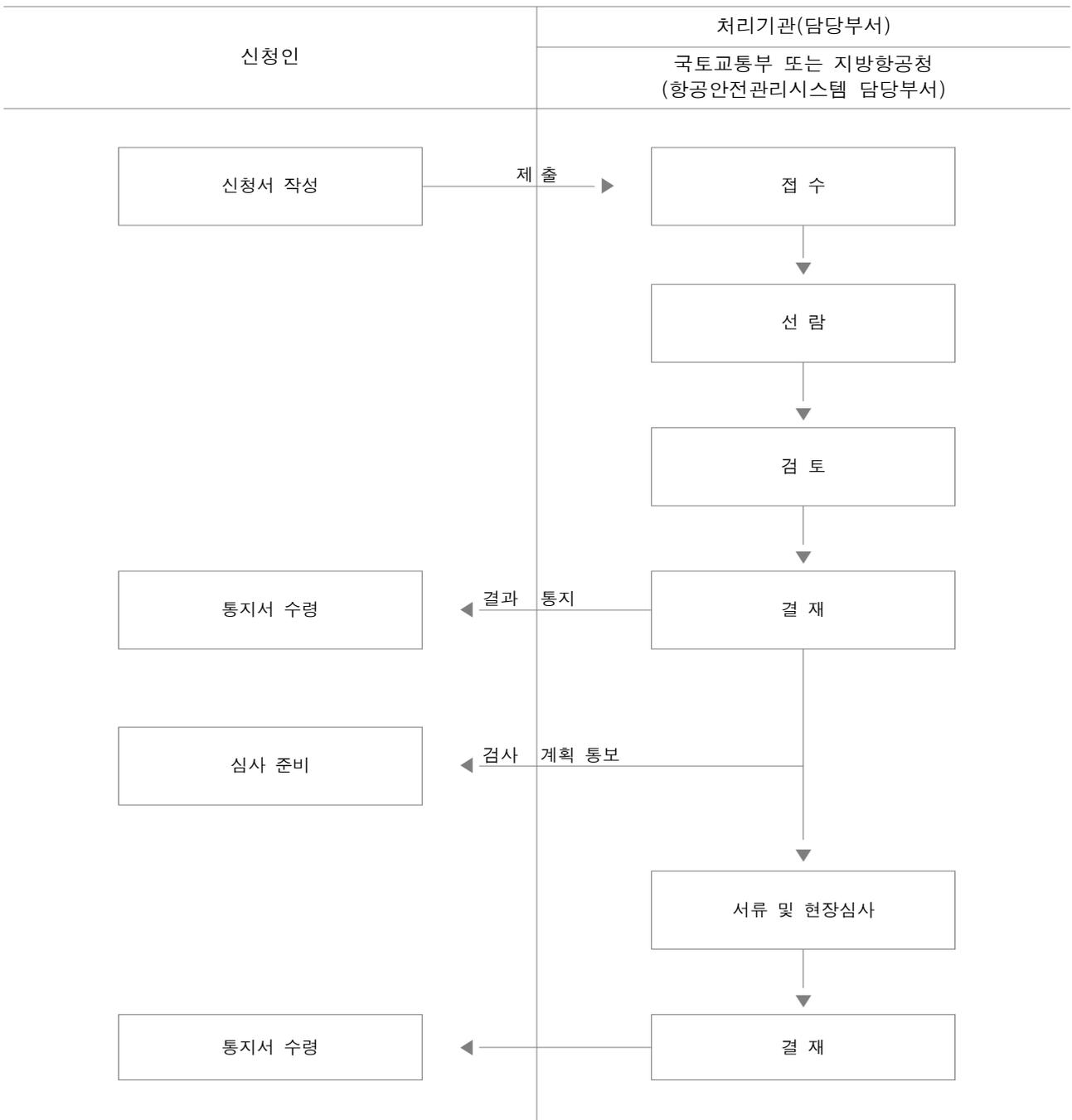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수수료(Fee)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사 업 분 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 형식증명 [] 부가형식증명 [] 제작증명 [] 기술표준품형식승인 [] 부품등제작자증명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 국내 [] 국제 [] 소형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변경 신청 사유	
----------	--

주요 변경 내용	
----------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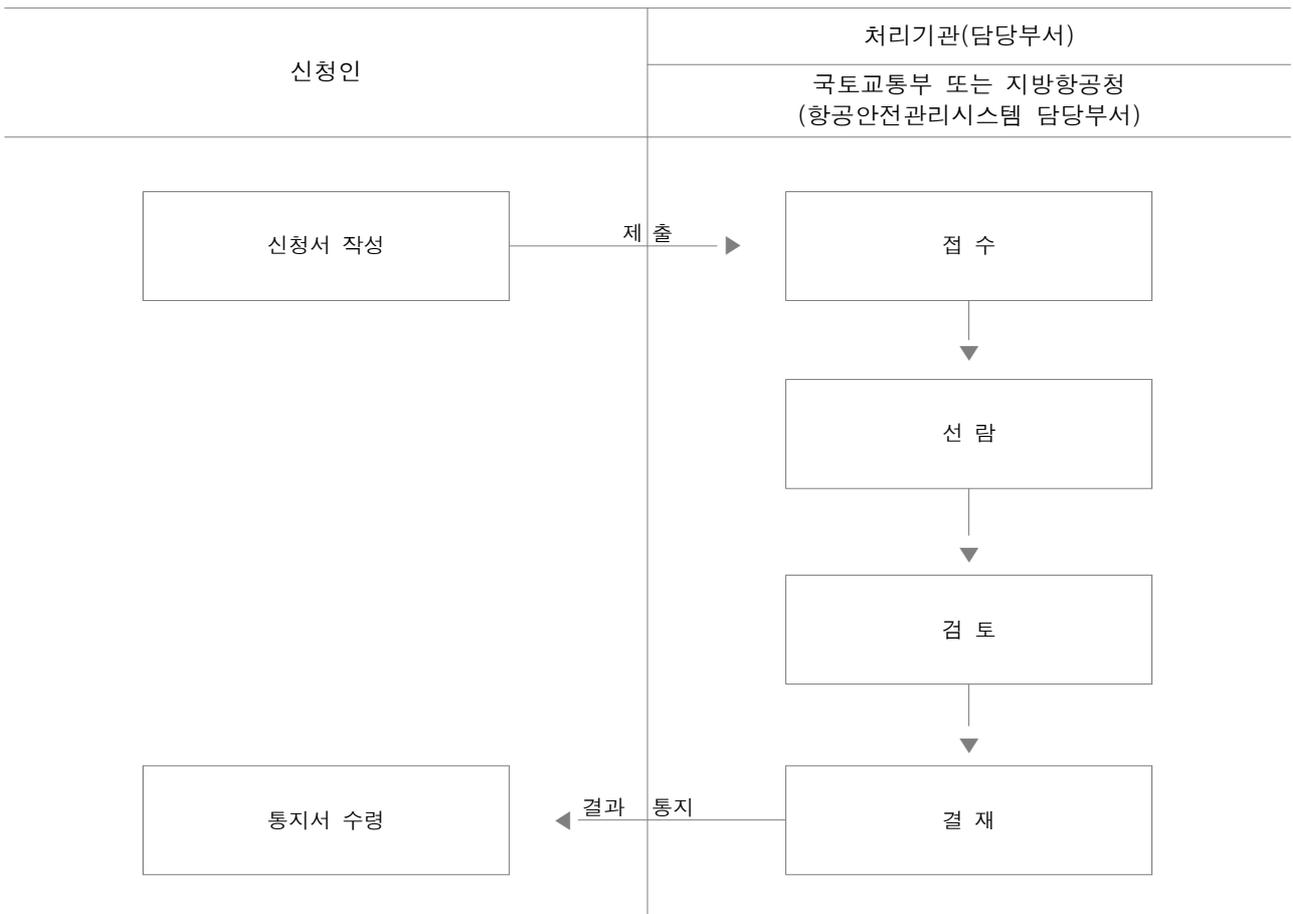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규대조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 항공기대여업 등록

1. 민원사무 안내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46조,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항공기대여업 등록기준(별표8) 만족여부를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항공기대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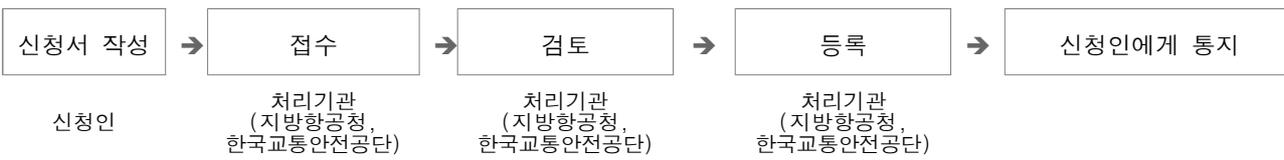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항 공 청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사업 개시 예정일, 도급(하도급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항공기취급업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 리 절 차



4 항공기취급업 등록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4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3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법 시행규칙 제304조의 항공기취급업 시설 및 경영능력 기준 (별표7) 만족여부를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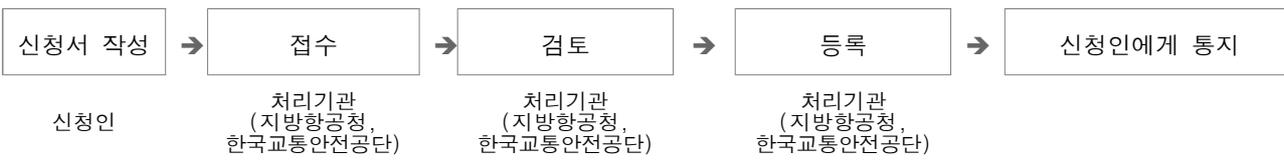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항 공 청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사업 개시 예정일, 도급(하도급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항공기취급업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 리 절 차



5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거나, 레저스포츠를 위해 대여,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50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별표 10) 만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항공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설 부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자본금		
	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의 명단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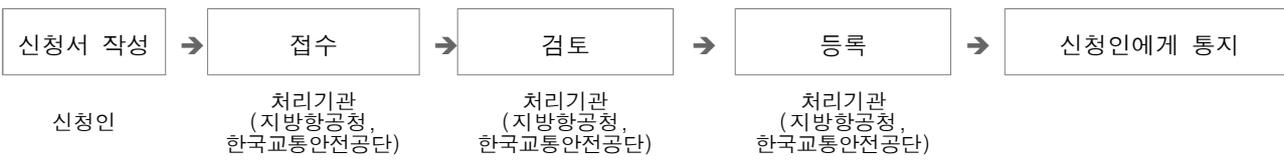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항 공 청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사업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사항[자본금,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종사자의 수, 사업 개시 예정일, 도급(하도급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항공기취급업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 리 절 차



1. 민원사무 안내

-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10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및 민원인이
제출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② 첨부서류(변경사유 및 증명서류)
 - 자본금 변경
 - 대표자 변경
 - 상호 변경
 -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 사업범위의 변경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수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산지방 항공청	항공운항과	20일
항공기취급업		항공안전과	14일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input type="checkbox"/> 소형항공운송사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취급업 <input type="checkbox"/> 항공레저스포츠사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정비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대여업	- 등록사항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소형항공운송사업) 14일(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내용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변경사유	

「항공사업법」 제10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에 따라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소형항공운송사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정비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취급업 <input type="checkbox"/> 항공기대여업 <input type="checkbox"/>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input type="checkbox"/> 항공레저스포츠사업 </div>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합니다.
---	-----------------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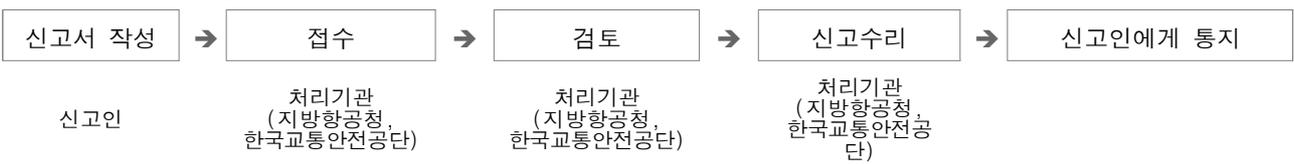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항 공 청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7 상업서류송달업 (변경)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항공사업법 제2조 제28호)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의 적합성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4. 신고절차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접수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 ②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5. 변경신고 절차(이미 신고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①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

※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6.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7일

<p>[<input type="checkbox"/>] 상업서류송달업</p> <p>[<input type="checkbox"/>] 항공운송총대리점업</p> <p>[<input type="checkbox"/>] 도심공항터미널업</p>	<p>[<input type="checkbox"/>] 신고서</p> <p>[<input type="checkbox"/>] 변경 신고서</p>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내용	자본금		
	사업내용(계약항공사명)		
	변경내용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사유		
임원의 명단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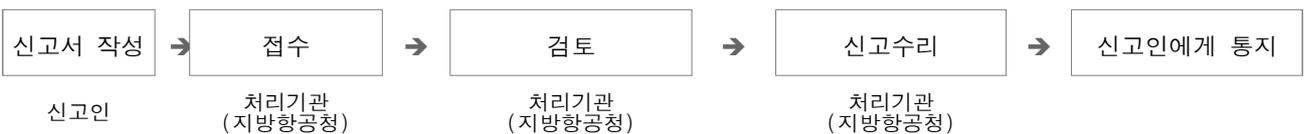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상업서류 송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터미널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상업서류 송달업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8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항공사업법 제2조 제32호)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의 적합성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4. 신고절차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수입인지 10,000원
 - ① 사업계획서
 - ② 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명세서
 - ③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 ④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⑤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왕래 교통수단 확보서류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5. 변경신고 절차(이미 신고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접수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①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6.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7일

9 운항, 정비규정 신고 및 인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사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 인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93조, 제96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운항·정비규정이 안전운항 유지를 위한 적합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 ②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③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15일(인가)
	항공검사과	10일(신고)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운항 []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정(변경) 사유			
설정(변경) 주요내용			

「항공안전법」 [] 제93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6조제1항에 따라

[] 운항 [] 정비 [] 규정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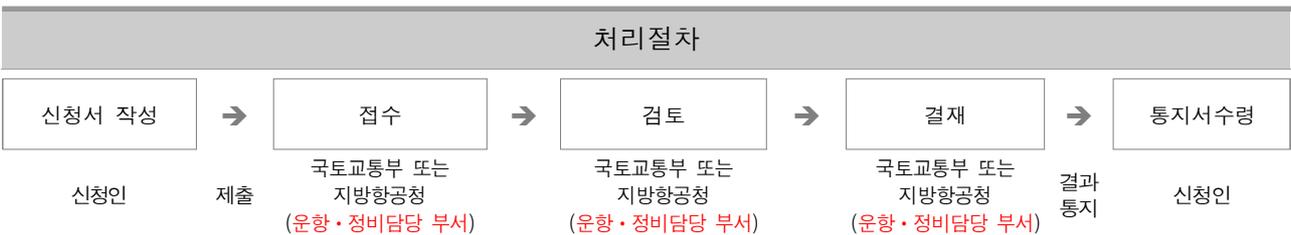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2.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인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인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운항 [] 정비 규정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정(변경) 사유		
설정(변경) 주요내용		

「항공안전법」 [] 제93조 []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7조제1항에 따라

[] 운 항 [] 정 비] 규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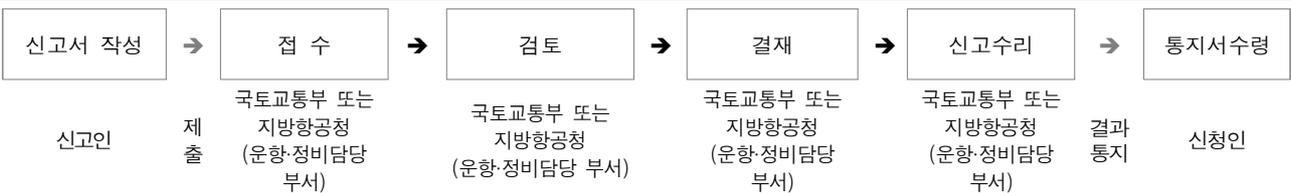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2.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구 내용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10 [경량]항공기조종연습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조종연습을 하고자 할 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지방항공청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46조제2항, 제116조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제294조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 구비서류 적법성 검토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1부
- ②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 사본(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47호 서식의 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2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200원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연습희망 기간	20 ~ 20	

「항공안전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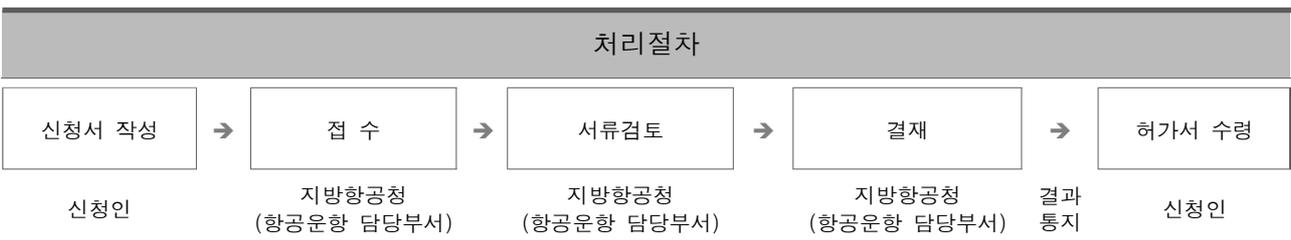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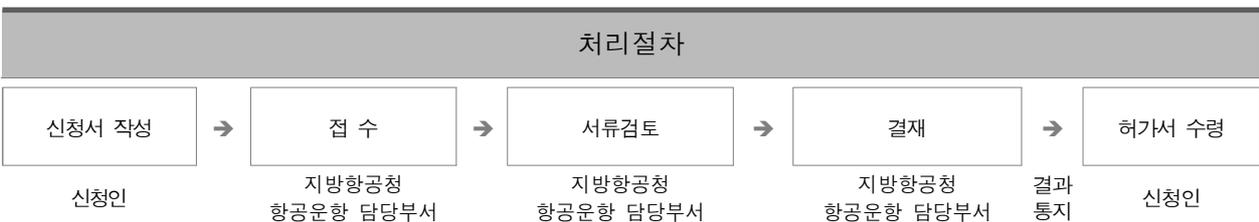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연습희망 기간	20 . . . ~ 20 . . .	

「항공안전법」 제1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4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 연습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127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정 인증 여부
- 운항목적의 타당성 여부
- 조종자 자격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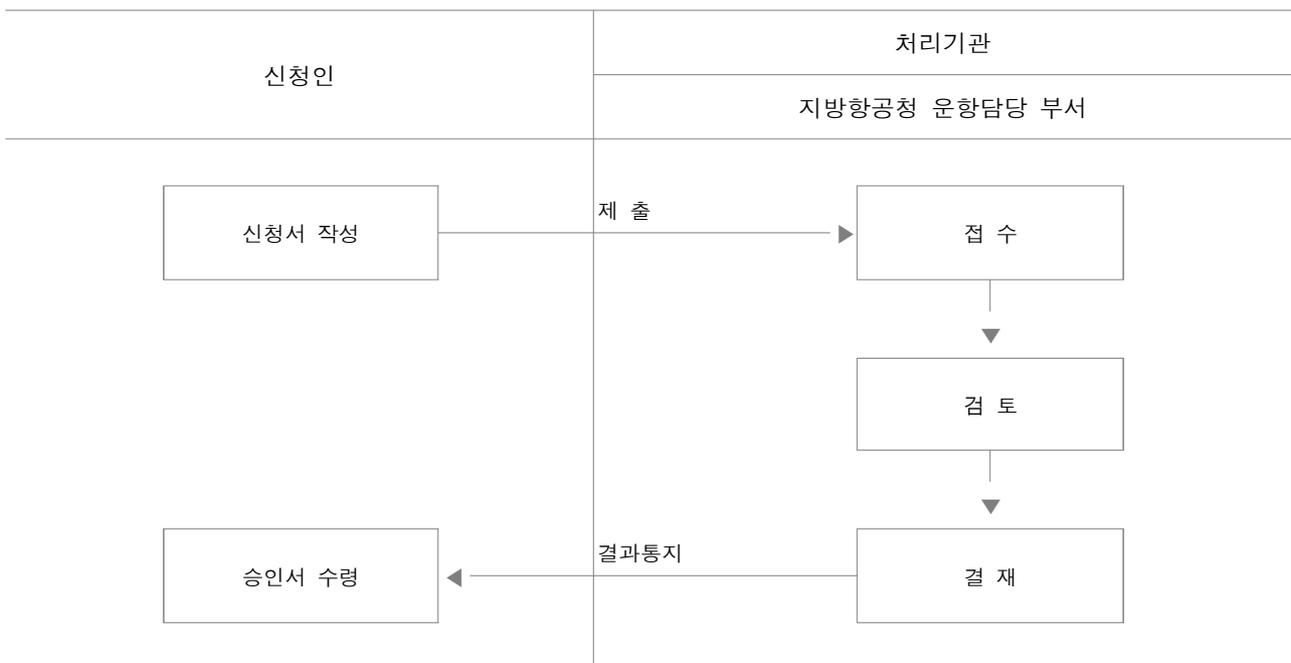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2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6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296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착륙장소 안전성 및 지상안전 조치여부
- 운항목적의 타당성 여부
- 비행통제지역 저촉여부
- 안전운항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 ① 성명 및 주소
- ②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일시 및 장소
(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 ④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이유
- 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⑥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 ⑦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 ⑧ 기타 참고가 될 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형식(경량항공기는 종류)	등록부호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6개월)	비행목적
	경로	
조 종 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항공안전법」 제66조제1항제1호·제1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96조에 따라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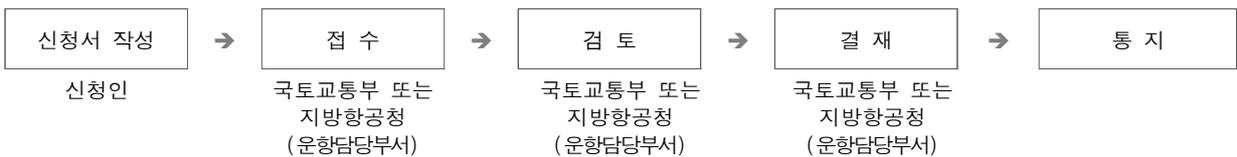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륙·착륙하려는 장소에 관한 서류(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합니다) 1부 2. 이륙·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에 관한 서류 1부 3. 이륙·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에 관한 서류 1부 4. 이륙·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에 관한 서류 1부 5. 이륙·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합니다)에 관한 서류 1부 6. 이륙·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7. 항공기사고 또는 경량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서류 1부 8.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 1부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착륙 시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에 관한 서류 1부 10.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서류 1부 11. 그 밖에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13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고도아래에서 비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8조제1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0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행 목적의 타당성 여부 및 안전조치 관계
- 비행통제지역 저축 여부
- 안전운항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 ① 성명 및 주소
- ②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 ④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 ⑤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 ⑥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 ⑦ 기타 참고가 될 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항 공 기	형식	등록부호
	일시	비행목적
비행계획	경로	고도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조 종 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승의 목적	
특기 사항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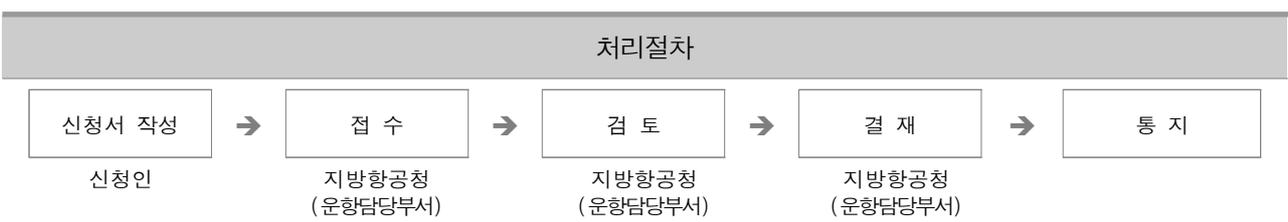
「항공안전법」 제6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14 통제구역 비행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비행이 통제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79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착륙장소 타당성 및 지상안전 조치여부
- 운항목적의 타당성 여부
- 안전운항 여부
- 당해 관할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1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15 물건투하 허가 또는 살포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에서 지상이나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투하하여서는 안되기에, 항공기에 의하여 물건을 투하하는 것을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1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물건투하 목적의 타당성 여부
- 안전성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 ① 성명 및 주소
- ②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 ④ 물건투하목적
- ⑤ 물건투하개요와 투하장소
- ⑥ 조종자 성명 및 자격
- ⑦ 기타 참고가 될 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자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종류	번호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개요	투하 또는 살포물건의 종류		
	투하 또는 살포의 목적		
	투하 또는 살포의 방법		
	투하 또는 살포의 장소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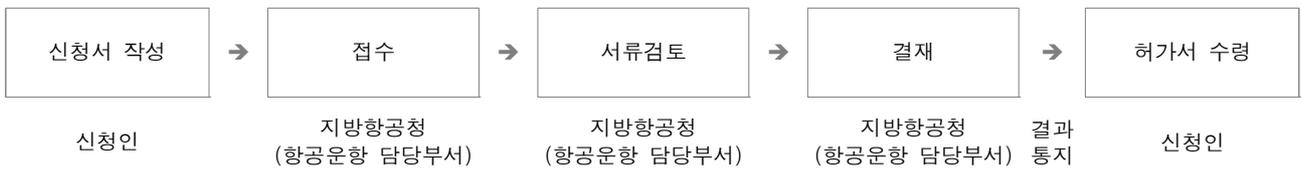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6 낙하산 강하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낙하산을 강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8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2조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낙하산 강하 타당성 여부
- 안전운항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구체적 내용)

- ① 성명 및 주소
- ② 항공기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 ④ 조종사 자격증명서
- ⑤ 동승자
- ⑥ 낙하산 강하 개요(강하일시, 형식, 장소 등)
- ⑦ 기타 참고가 될 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실시간 연락 가능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
	비행고도		
	비행경로		
조종사 자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종류	번호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강하 개요	낙하산 강하일시		낙하산형식, 기타 필요사항
	낙하산강하장소(주소, 좌표, 반경)		
	낙하산 강하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낙하산 종류		낙하산 크기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낙하산 강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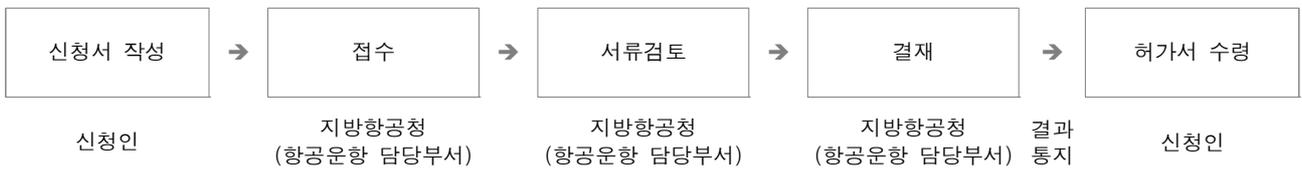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구역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정성인증서 5. 보험가입증명서 <p>※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p>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7 곡예비행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5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곡기비행 목적의 타당성 여부
- 안전운항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

- ① 성명 및 주소
- ②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비행계획의 개요
- ④ 곡예비행 내용·이유·일시 및 장소
- ⑤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 ⑥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목적
- ⑦ 기타 참고가 될 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곡예비행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항공기	형식	종별	등록부호
	제조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소유자		탑재무선설비 개요
비행계획의 개요	비행목적		비행이착륙 일시 -
	비행고도		
	비행경로		
곡예비행 개요	곡예비행내용		비행일시
	곡예비행장소(주소, 좌표, 반경)		곡예비행 이유
조종사 자격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종류		번호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목적		

「항공안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에 따라 곡예비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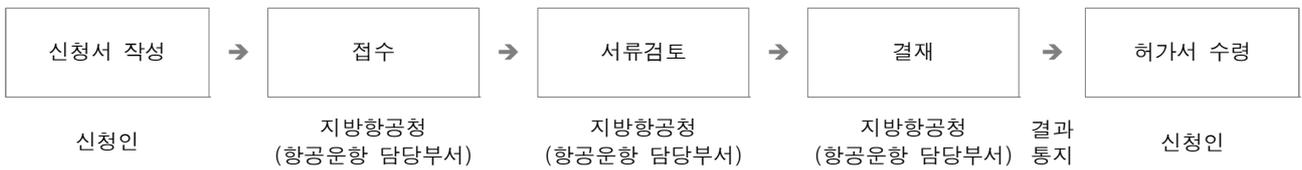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8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조종사 등 항공기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68조제5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안전운항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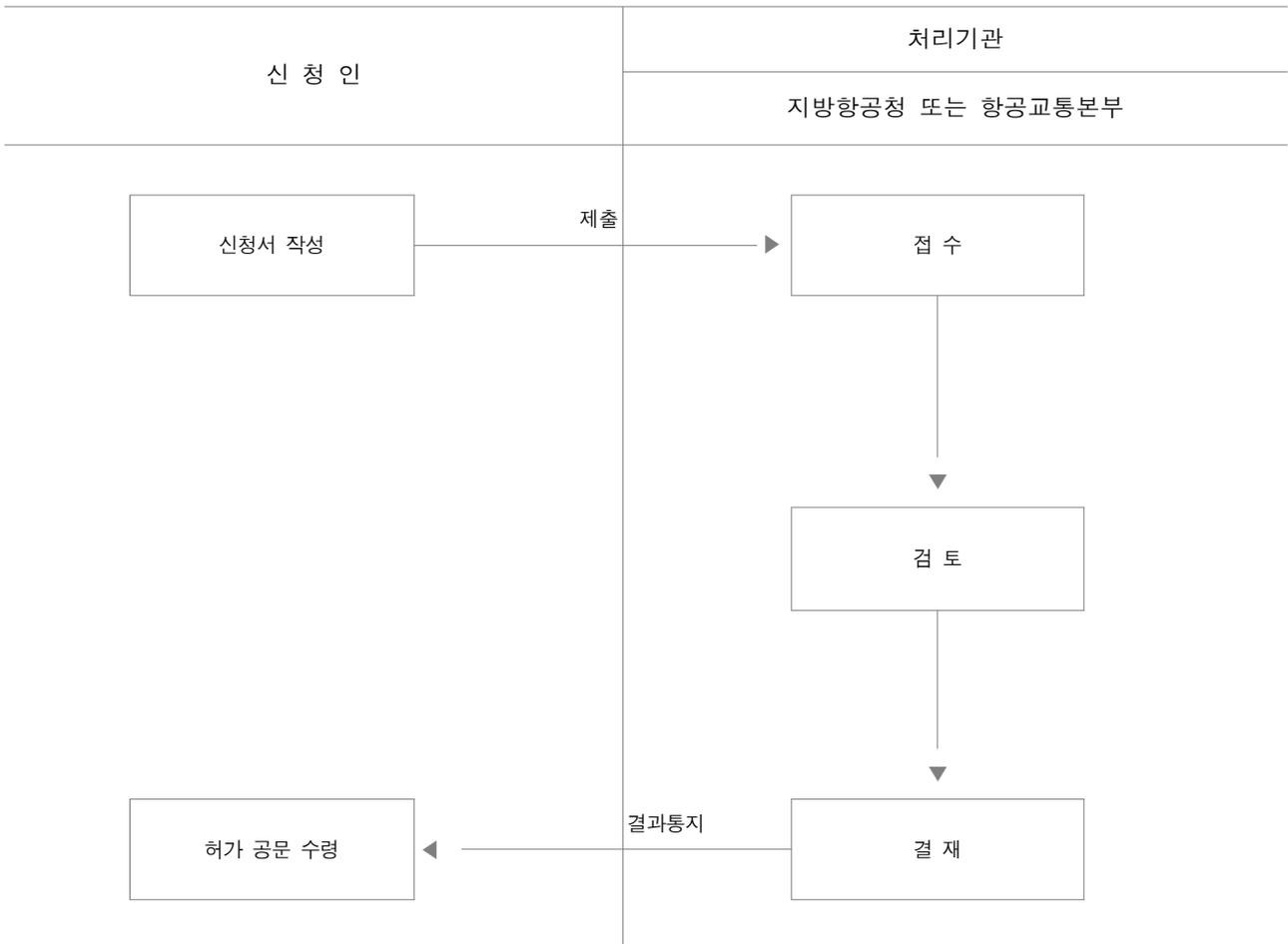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1부 3.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1부 4.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 1부(「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무인항공기의 이륙·착륙 요건 6. 무인항공기의 감지·회피성능 7. 비상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9.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0.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1.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2.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9 모의비행장치 지정

1. 민원사무 안내

- 실제의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39조의2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0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 요령”에 의한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1부
- ②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 ③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 ④ 실제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모의비행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
- ⑤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점검요령
- ⑥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 ⑦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 ⑧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항공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392,000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_____)	
모의 비행 훈련 장치 개요	종류/등급/형식(모델)	
	제조사명	
	소유자	
	제조일	
	제조번호	
	설치장소	

검사 희망 일시 및 장소	
제조 후 총 사용시간	
전회검사 후 총 사용시간	

「항공안전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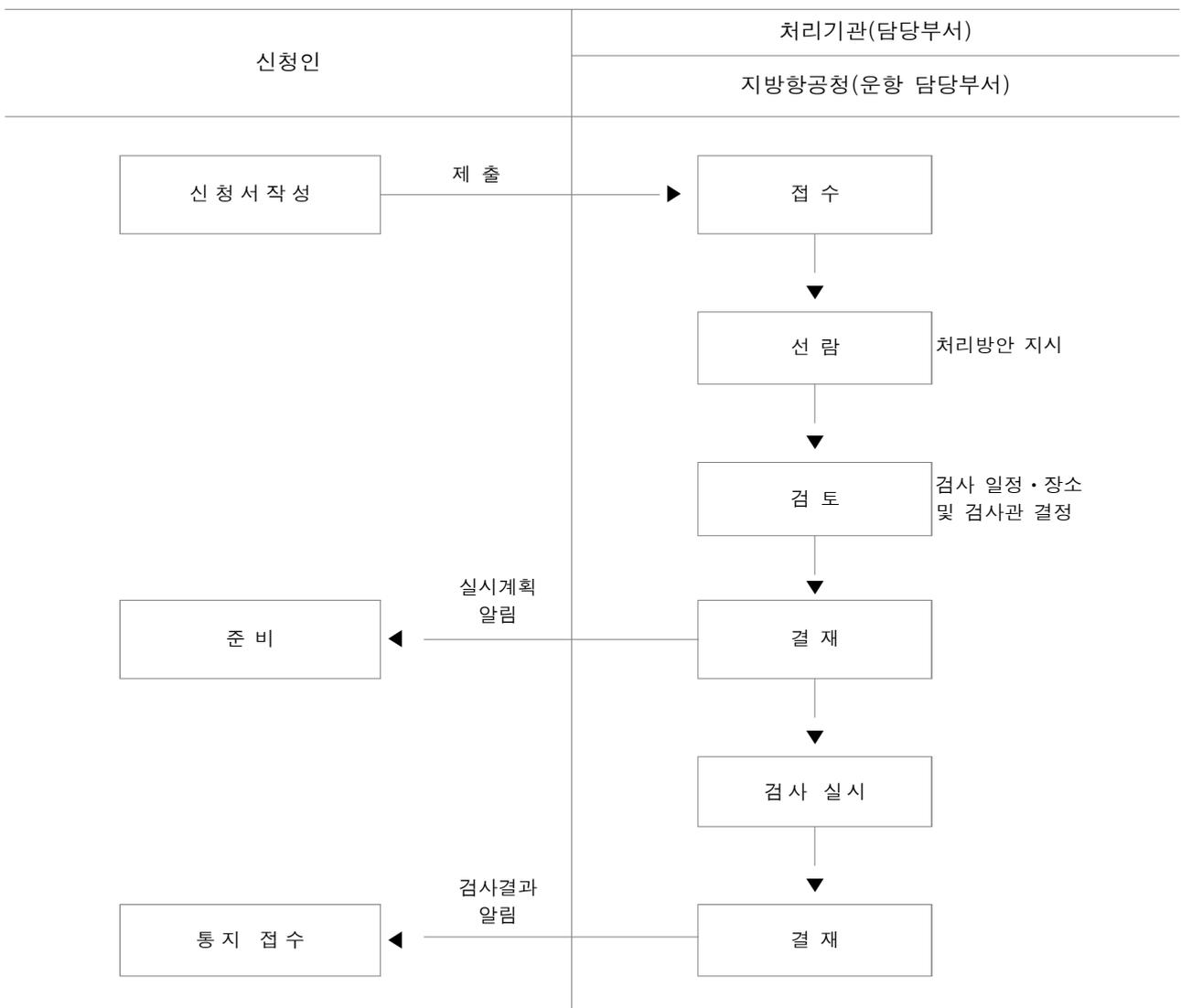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0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60조제2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기 운항시간, 기종, 노선, 편명 변경의 타당성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변경내용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 변경 인가] 신청서 [] 변경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변경인가 25일 변경신고 7일
신청(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신고)내용	변경사항(신·구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		
	변경사유		
	실시 예정기일		

「항공사업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 변경 인가] 를 신청합니다.
[[] 변경 신고]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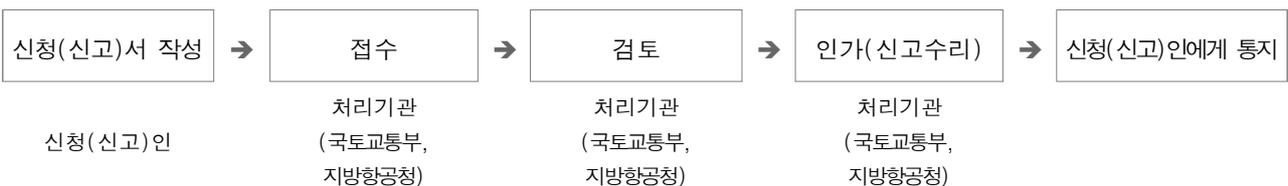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21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상운송 내용의 타당성 여부
- 항공기의 안전성 여부 확인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운항내용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1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small>(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small>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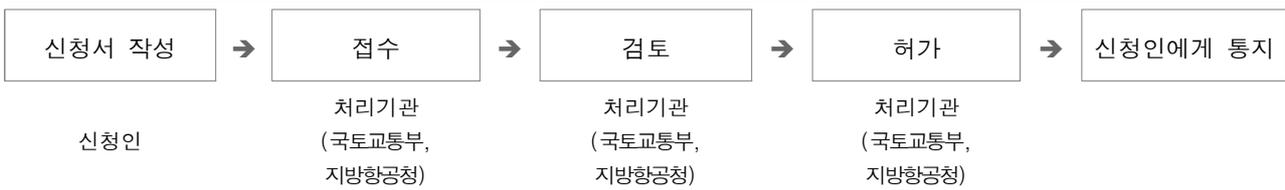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1.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2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2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기 운항시간, 기종, 노선, 편명 변경의 타당성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3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운항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체의 부정기운항 수요 발생 시 이에 대한 운항허가 업무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 제3항, 제10조제3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기 운항시간, 기종, 노선의 타당성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5일

* 군공항의 경우 1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4 외국항공기 항행(변경)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항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100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4조, 제275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기 운항시간, 기종, 노선, 편명 변경의 타당성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2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주소 (소재지)		(전화:)
항공기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 부호			
항행의 경로[기항지(寄航地)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및 일시			
이륙·착륙하려는 국내 비행장등의 명칭·위치 및 그 일시			
항행의 목적			
운항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화물의 명세			

「항공안전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4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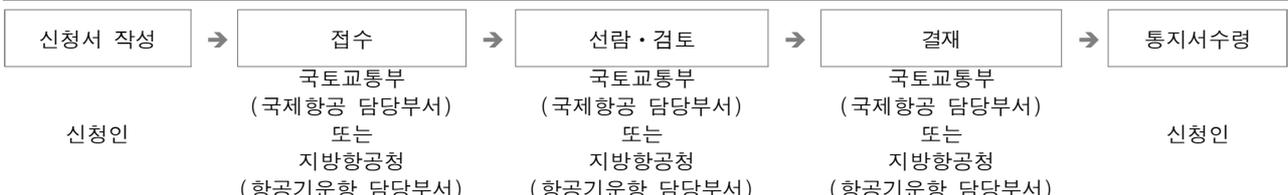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주소 (소재지)		(전화:)
변경사항(신·구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			
변경사유			

「항공안전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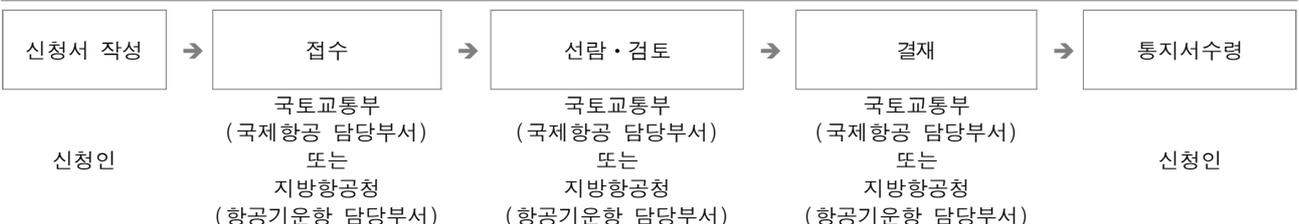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유의사항

-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5 외국항공기 국내사용(변경)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가 대한민국 내의 각 지역 간의 항공에서 운항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101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6조, 제277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기 운항시간, 기종, 노선, 편명 변경의 타당성 여부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2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소재지)	국적
		(전화:)

항공기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 부호	
운항의 경로[기항지(寄航地)를 명확하게 기록할 것] 및 일시	
이륙·착륙하려는 국내 비행장등의 명칭·위치 및 그 일시	
운항의 목적	
운항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화물의 명세	

「항공안전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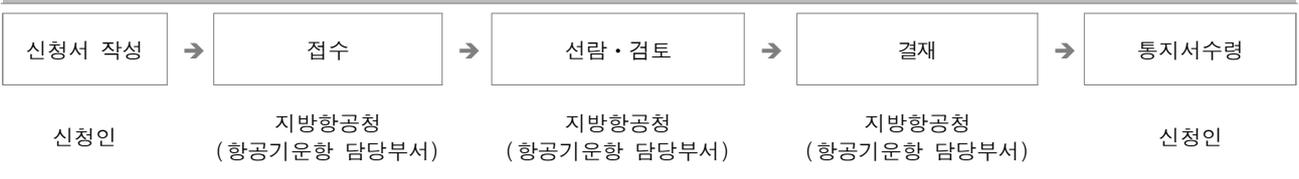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주소 (소재지)		(전화:)
변경사항(신·구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			
변경사유			

「항공안전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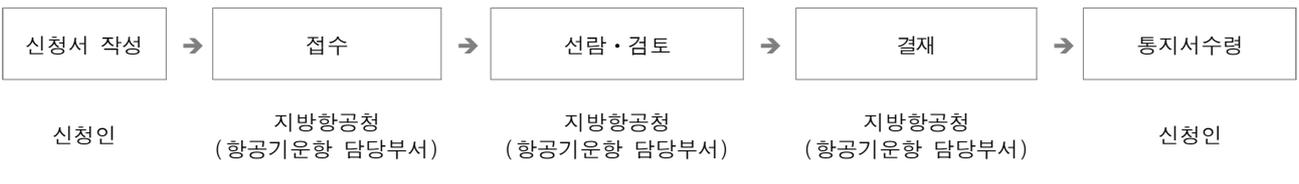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6 운영기준 변경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운송사업자가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정비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운영기준을 변경 신청하며, 변경된 사항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승인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1조제3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안전운항 유지를 위한 적합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운영 기준 인가 신청서 1부
- ② 변경된 운영기준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명칭	성명(대표자)
	운항증명 번호	전화번호
	주소(운항주기지의 주소)	
변경사유 및 내용		
변경 예정일		

「항공안전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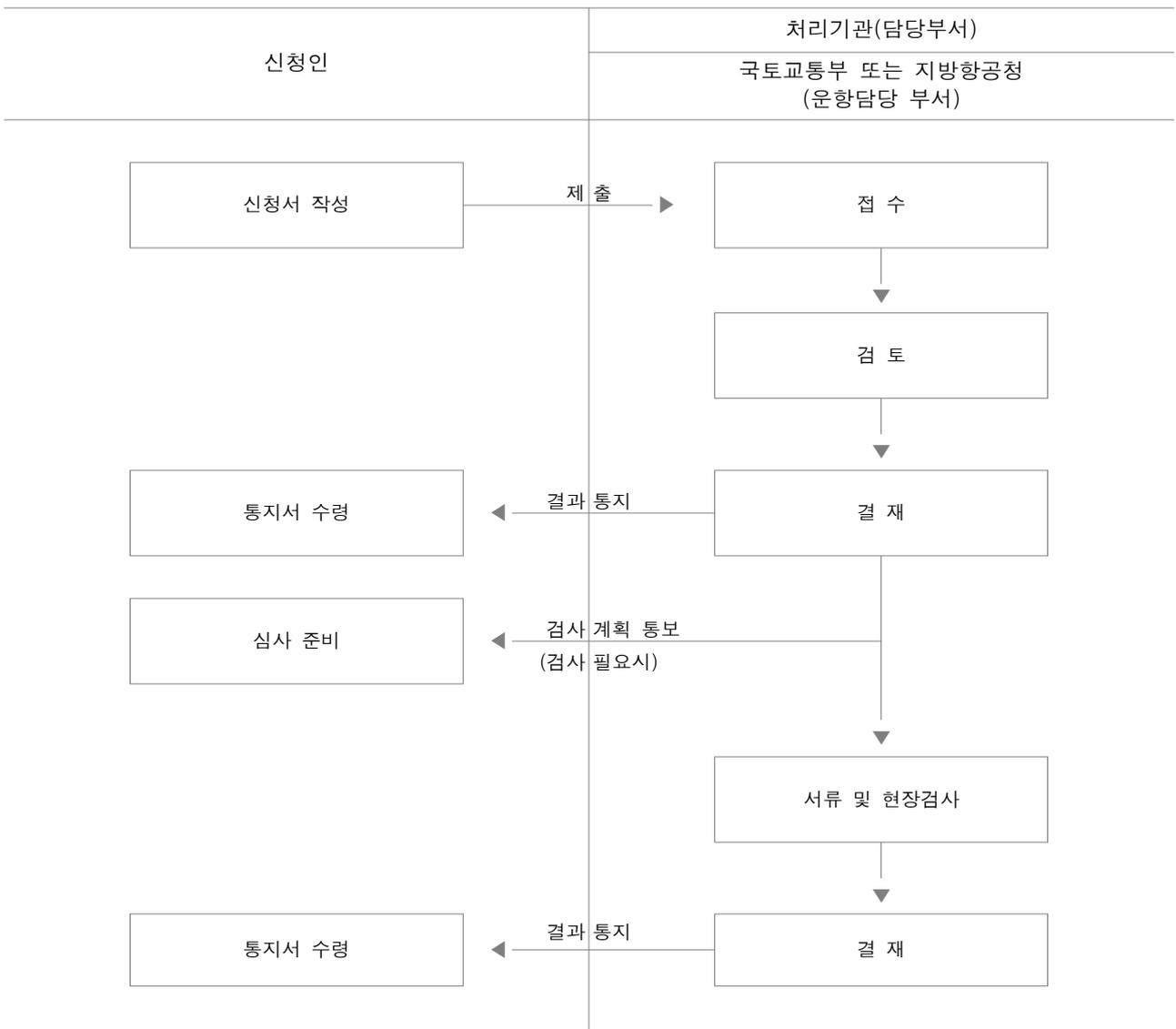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기준 변경(안) 2.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7 운항증명 및 변경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운송사업자가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안전운항을 위한 적합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운항규정 신청서 1부
-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9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780,000

운항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회사명 및 주소
	운항주기지의 주소

운항 개시 예정일		
회사식별 부호(예정)	3개 문자로 된 회사식별 부호(우선순위 순으로 적음)	
회사대표	성명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직위	

사업종류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

항공기 정보	기종	제작년월일
	승객좌석수 또는 화물적재용량	

운항지역	
------	--

예정된 운항 또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정보	
---------------------------------	--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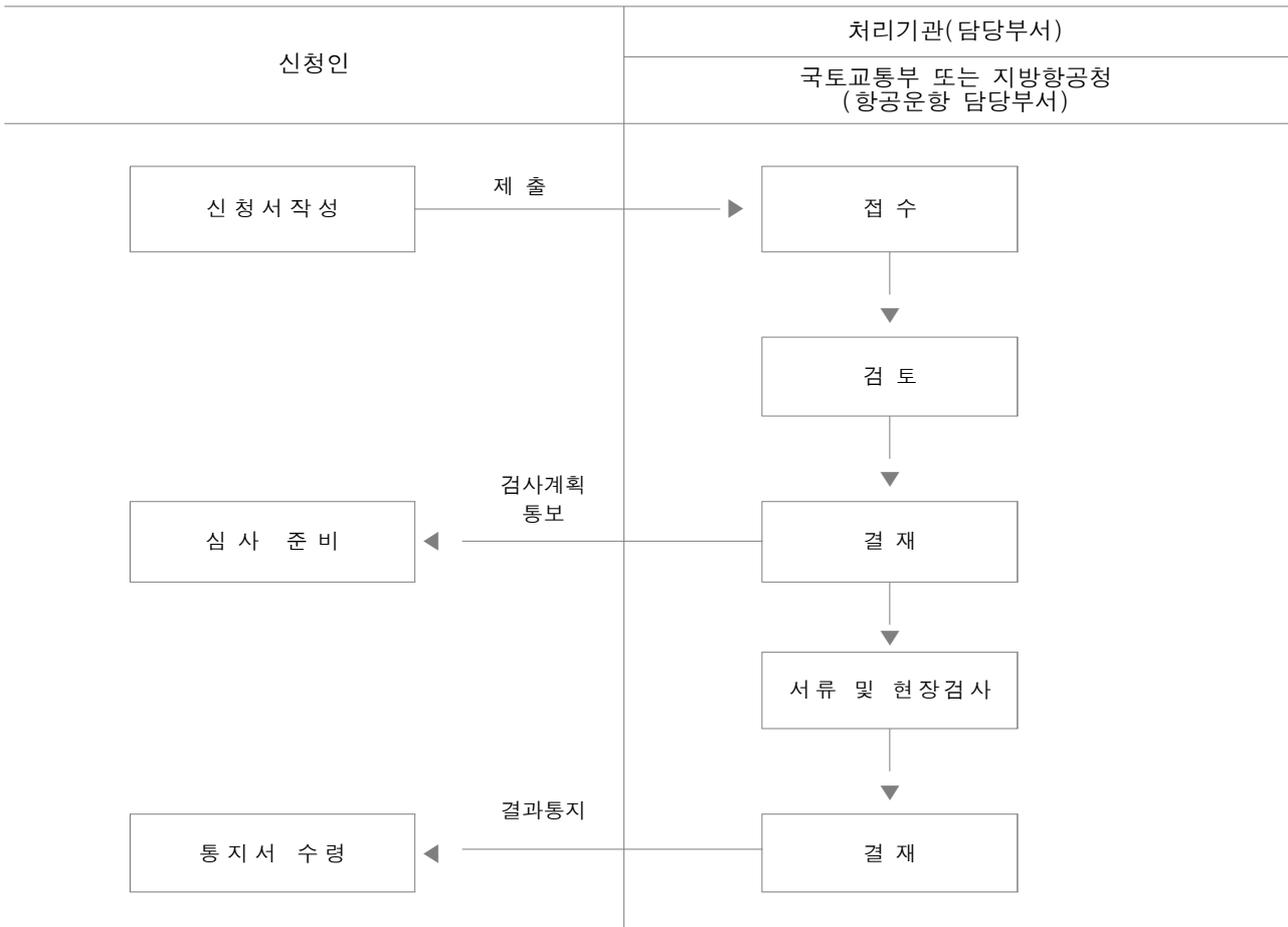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운항증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명칭	성명(대표자)
	운항증명 번호	
	주소(운항주기지의 주소)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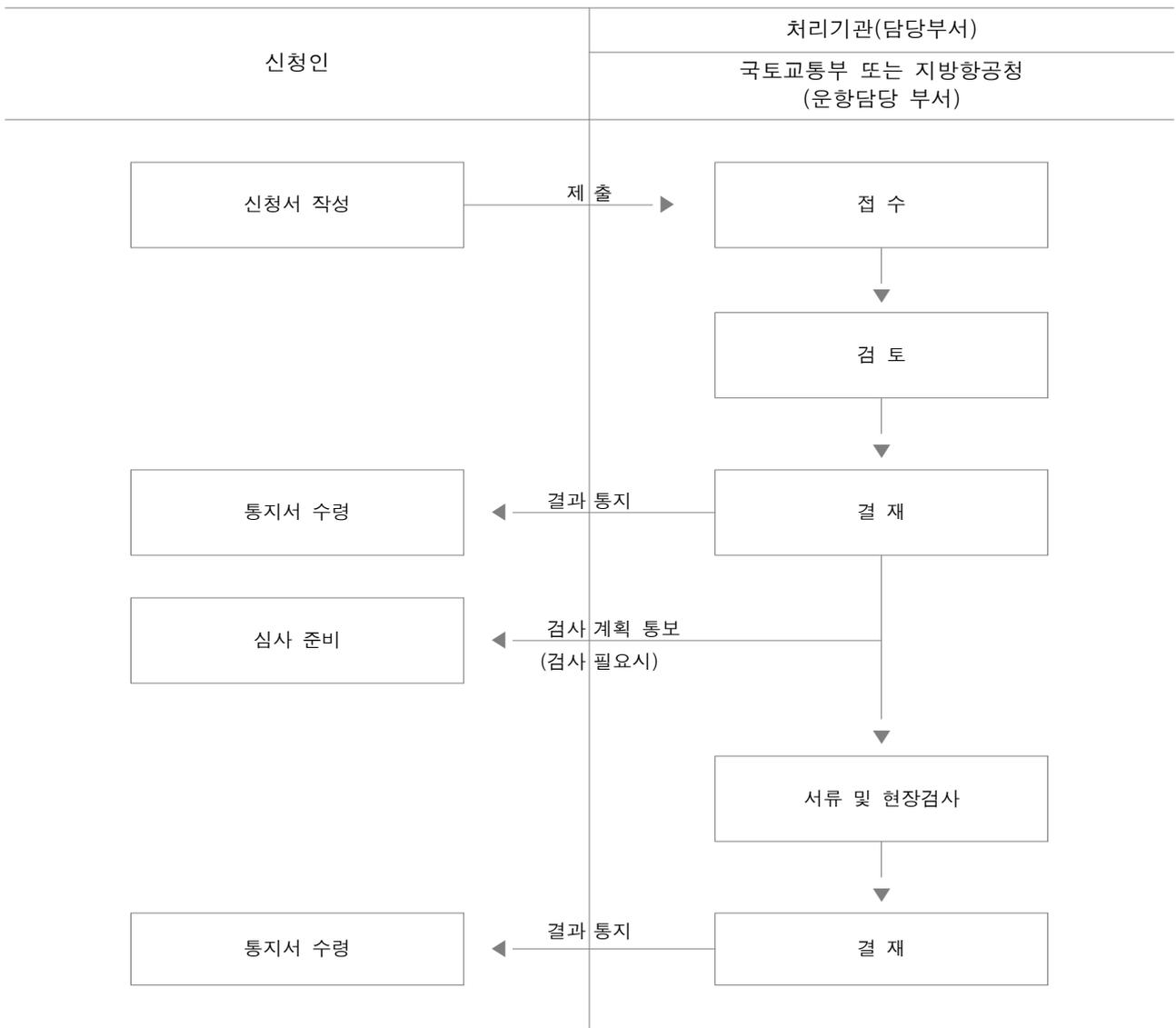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8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운송사업자가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안전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운항규정 신청서 1부
-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서 정한 제출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15일) ·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45일) · 노선 추가 개설(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390,000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 기간 <small>(하단참조)</small>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운항증명번호			
변경사유	선택	변경사항	변경예정일 <small>(해당되는 난에만 기재)</small>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input type="checkbox"/>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	
	<input type="checkbox"/>	노선 추가 개설	
	<input type="checkbox"/>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	
	<input type="checkbox"/>	사업 합병	
운항관련	투입기준		
	개시에정일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 2.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 15일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45일 노선 추가 개설: 5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9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등록

1. 민원사무 안내

-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및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2. 관련법규

- 항공사업법 제10조 및 제30조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별표2) 및 제18조의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별표4) 만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32조 제1항제2호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1부
-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시 지원원계획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소형항공 운송사업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25일
항공기 사용사업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5일(소형항공운송사업) 20일(항공기사용사업)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자본금		
	사업 범위 [<input type="checkbox"/>] 소형(여객) [<input type="checkbox"/>] 소형(화물)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항개시예정일		
	임원의 명단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라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 운송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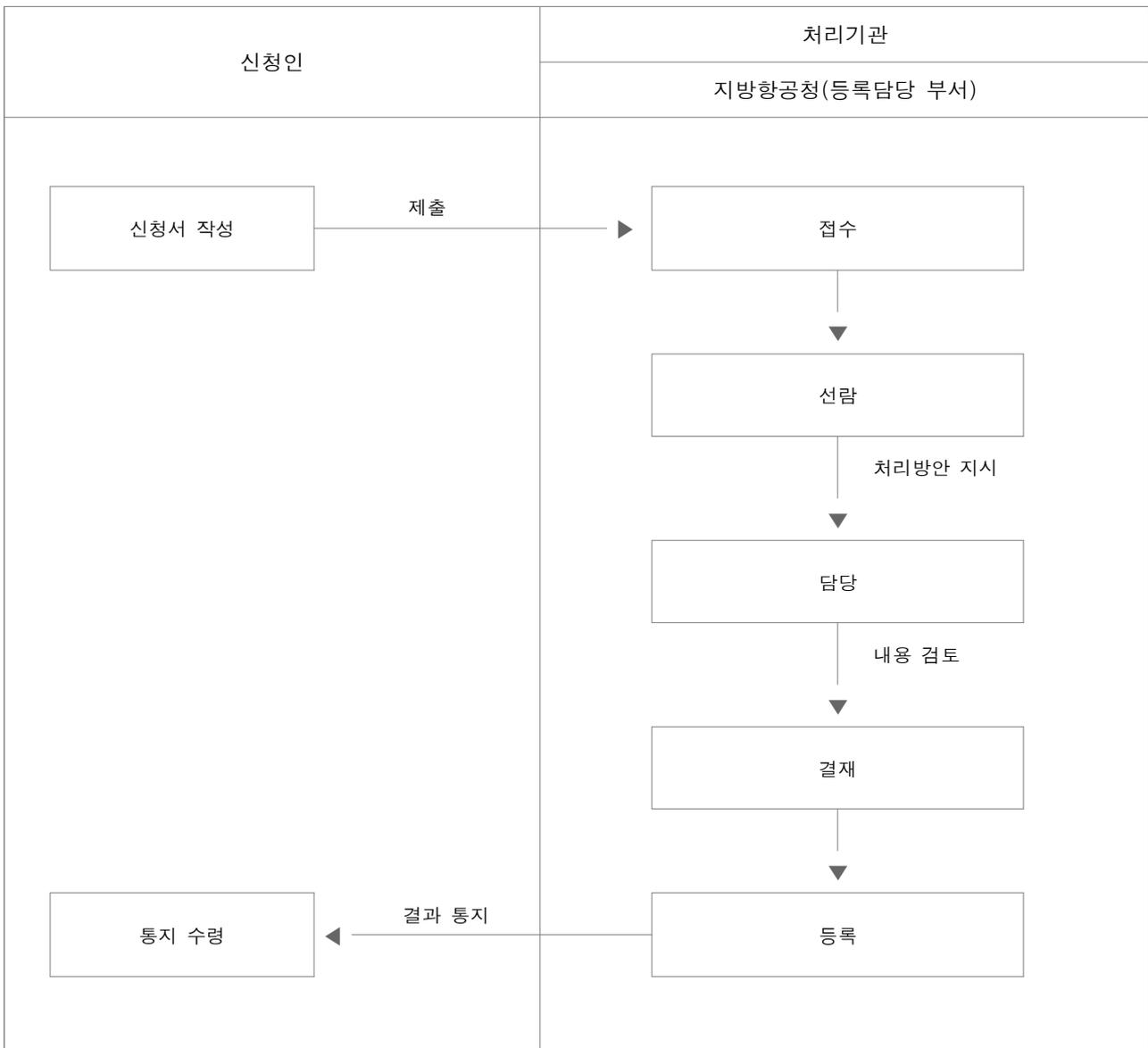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운항증명(「항공안전법」 제90조)
 -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항공안전법」 제93조)
2.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전화번호 051-974-21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0 소음기준적합증명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할 때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25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 36)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1부
- ② 당해 항공기의 비행교범 1부
- ③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④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

※ 대상 :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에서 규정한 항공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규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항공기	제작자 주소	
	제작자 성명(명칭)	
	종류	국적 및 등록기호
	형식	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	제작일자
	감항증명유효기간	소음기준적합증명번호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항공안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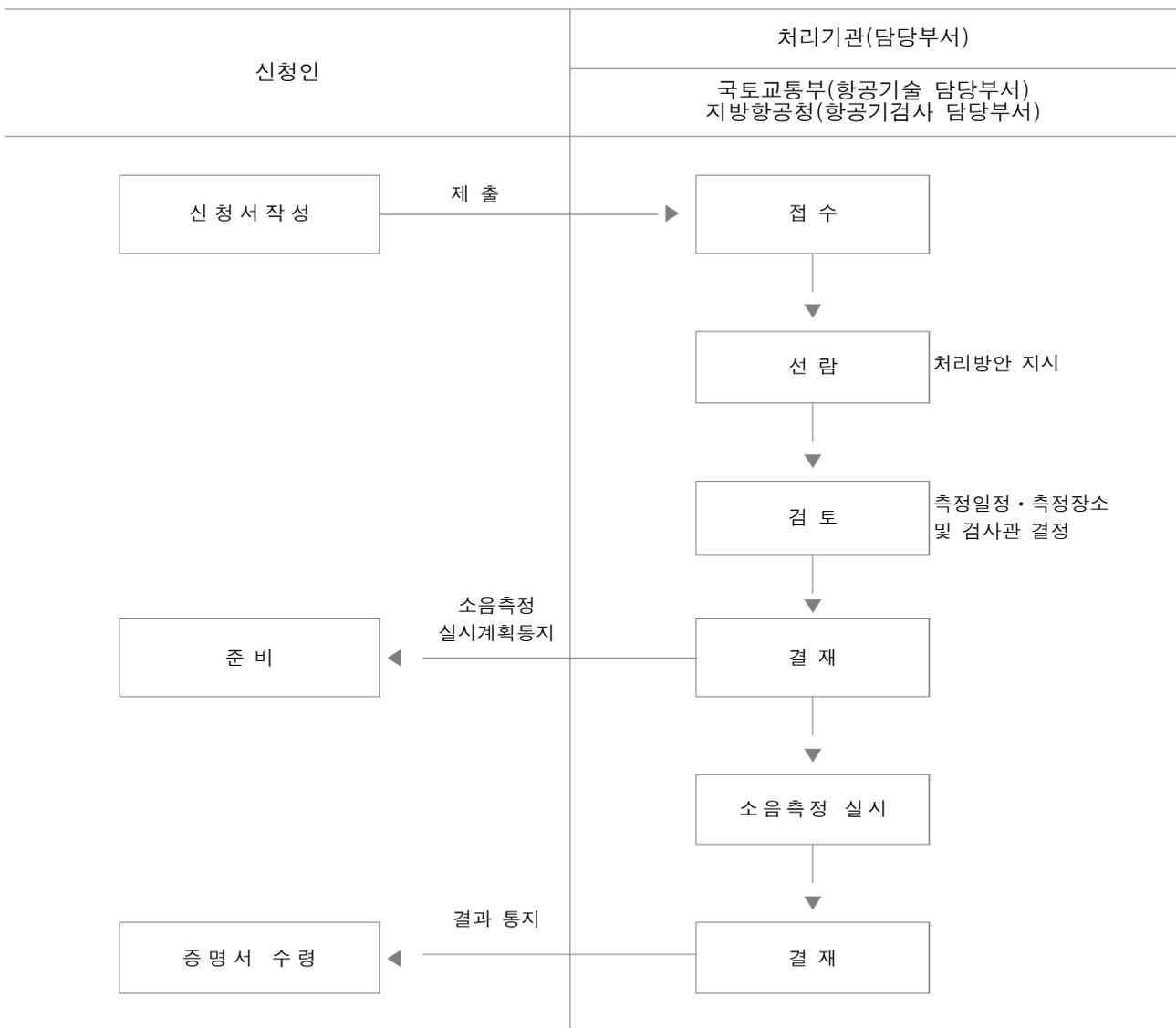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 3. 수리·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騒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1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감항성)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받고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23조
- 항공안전 시행규칙 제35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인증 절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항공기 표준 감항증명 신청서 1부
- ② 비행교범
- ③ 정비교범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규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또는 모델	
	제작자 성명(명칭)	
	제작일련번호	
	제작일자	
	표준감항 분류	
	운용분류	
	제작 후 총 사용기간	

검사 희망 장소 및 일자

「항공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표준감항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2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으로 용도 분류는 제한, 실험 및 특별비행허가로 구분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3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훈령(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1부(제한)

- ① 항공기 특별 감항증명 신청서 1부
- ② 비행교범
- ③ 정비교범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서류

나. 신청서 1부(실험/특별비행허가)

- ① 항공기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②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및 등록부호
- ③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 등)
- ④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 ⑤ 동승자의 인적사항 및 동승목적
- ⑥ 기타 비행과 관련된 사항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7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규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제한)
- 없음(실험/특별비행허가)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또는 모델	
	제작자 성명(명칭)	
	제작일련번호	
	제작일자	
	특별감항증명 분류 [] 제한분류 [] 실험분류 [] 특별비행허가	
비행 계획	비행 목적(용도)	
	일시 및 경로	
	제한사항	

그 밖에 비행과 관련된 사항

「항공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감항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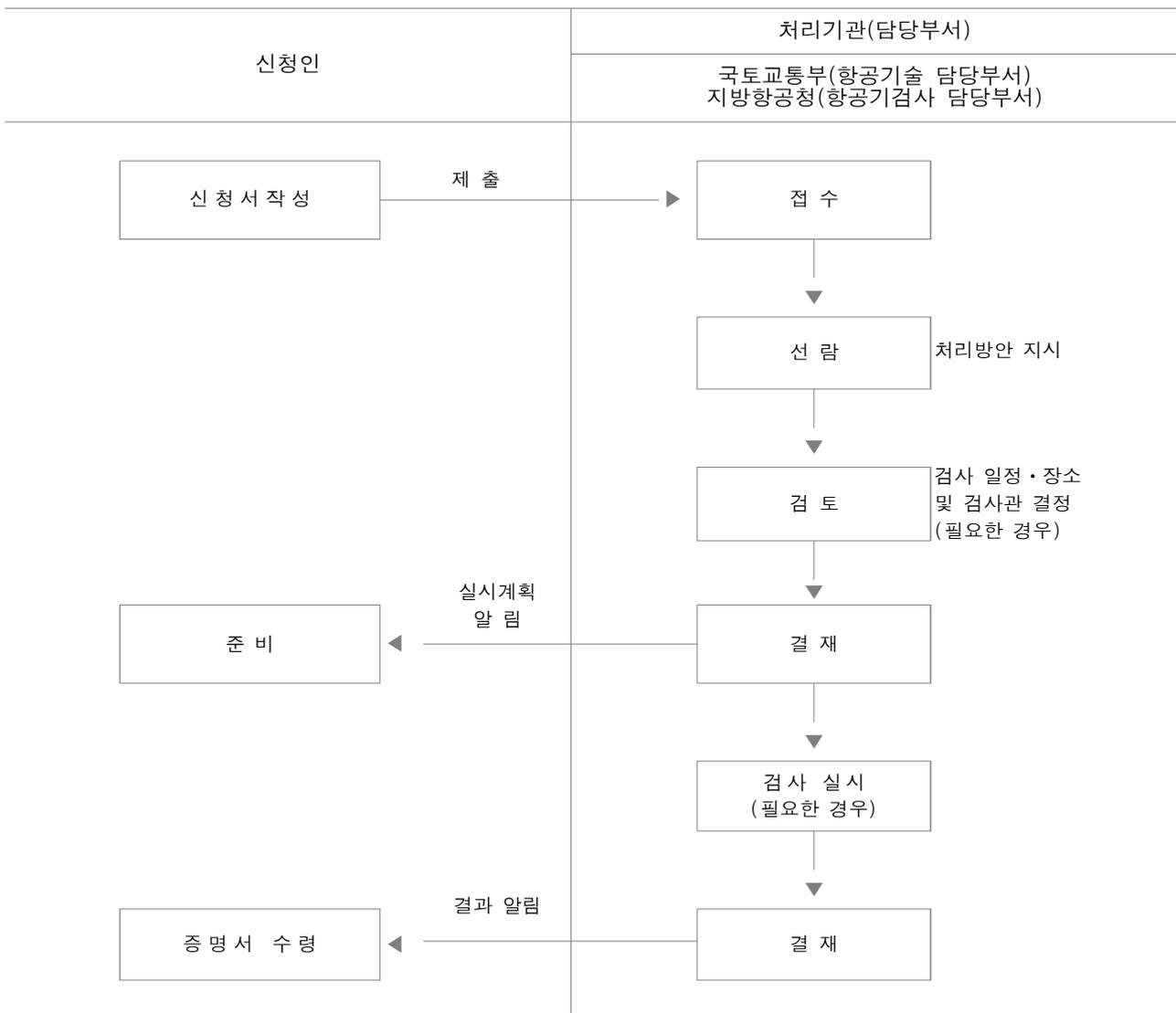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행교범(연구·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비교범(연구·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3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감항 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수리·개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30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훈령(항공기등의 수리·개조 승인지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 신청서 1부
- ②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 1부

※ 대상 :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항공안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를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규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7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주소 Address 전화(Tel):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Aircraft) <input type="checkbox"/> 발동기 (Engine) <input type="checkbox"/> 프로펠러 (Propeller) <input type="checkbox"/> 장비품 (Components)	소유자명	
	국적 및 등록기호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	
	형식	
	일련번호	
	작업 형식 <input type="checkbox"/> 수리 <input type="checkbox"/> 개조	
비고 Remarks		

「항공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수리·개조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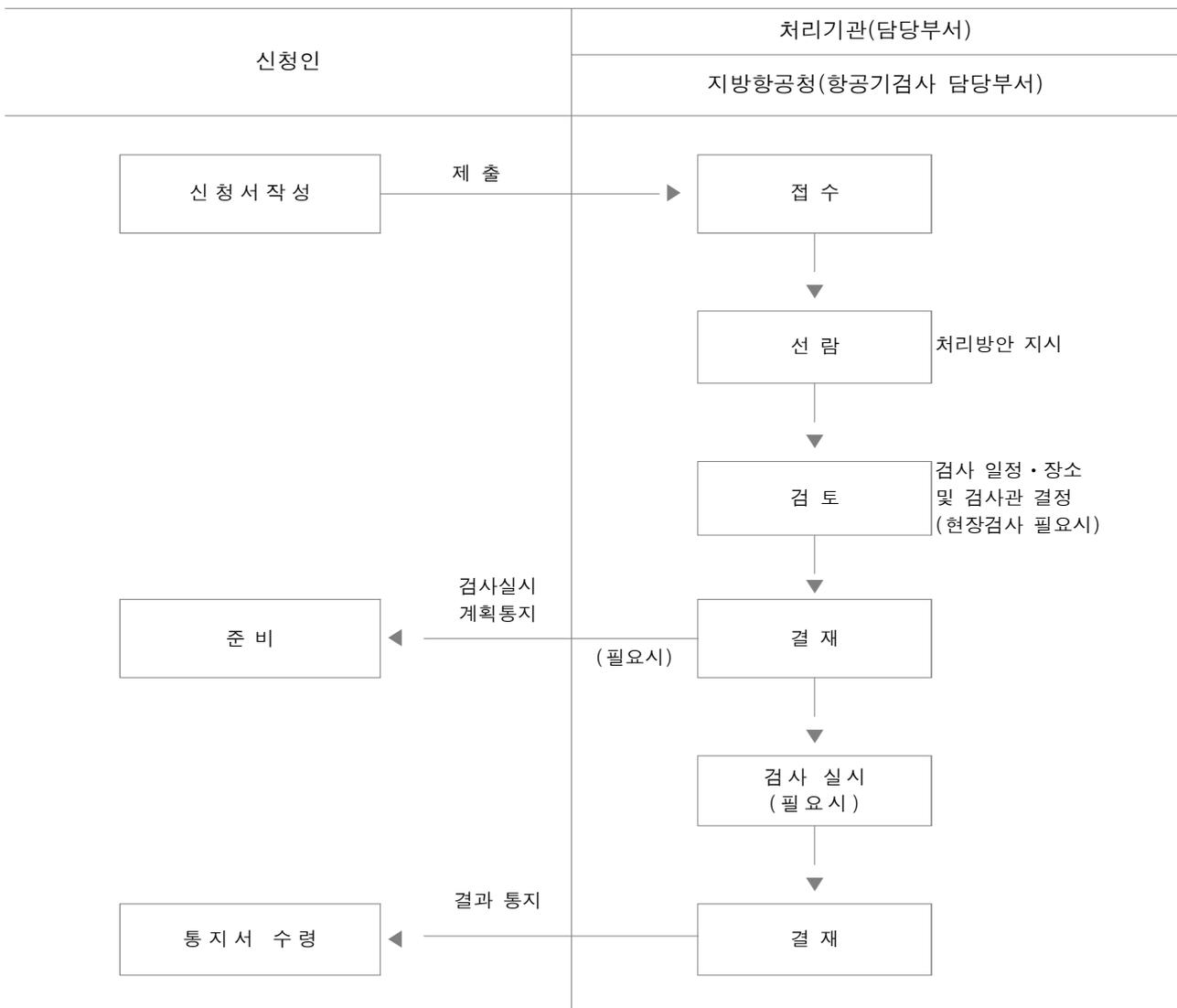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지방항공청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1. 수리·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개조 작업지시서를 포함한다)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4 정비조직인증

1. 민원사무 안내

-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부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한 업체의 조직, 인력 및 검사체계 등에 대하여 서류검사 및 현장방문 등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업무한정 범위 내에서 정비를 수행하도록 인증서 및 운영기준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제도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 97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1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1조,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 인증심사지침에 의거 신청한 정비조직의 인증여부를 서류 및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1부
- ②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2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① 신규 및 갱신 신청시 78만원
- ②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시 39만원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an AMO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5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전화(Tel):
정비하고자 하는 범위 Ratings Applied for		
정비범위 설정사유 Reason for the Ratings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 of Aviation Act and Article 27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apply for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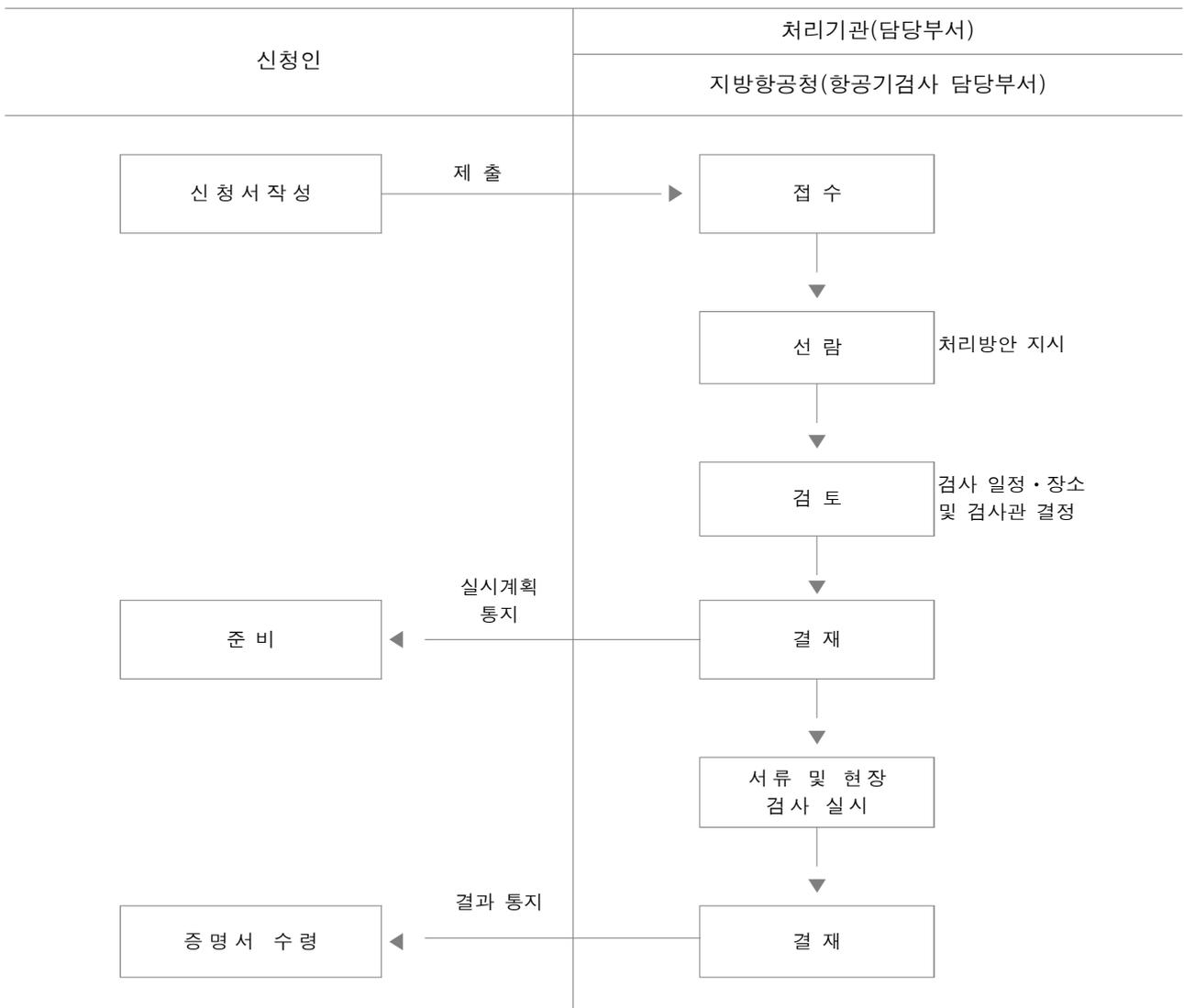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조직절차교범(copy of Maintenance Organization Procedure Manual)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Chapter

IV

공항시설국

35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6조~제8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행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 비행장의 주변에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당해 비행장의 공사예정기일까지 그 물건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행장의 체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비행장의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비행장 표지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 비행장 설치기준 참조)
- 헬기장 설치예정지역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해야 함.
 -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해야 함.
 -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공공시설 계획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시행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 ③ 사업 내용 별 추정사업비(공사비 포함)
- ④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 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가.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수상헬기장에 한함)
- ⑥ 비행장 설치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 ⑦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 ⑧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 ⑨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⑩ 해당 비행장의 소요 구역도면 및 인접구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⑪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⑫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함)
- ⑬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 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육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 헬기장 : 평면도 및 부근도
 - 다. 선상헬기장 :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 ⑮ 육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육상헬기장에 한함)
 -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 다.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 ②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③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④ 계획평면도,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⑤ 공사예정표
- ⑥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 ⑧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⑨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⑩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⑩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40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공항시설법 제60조(항공정책실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에 의거 납부)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칭		
위치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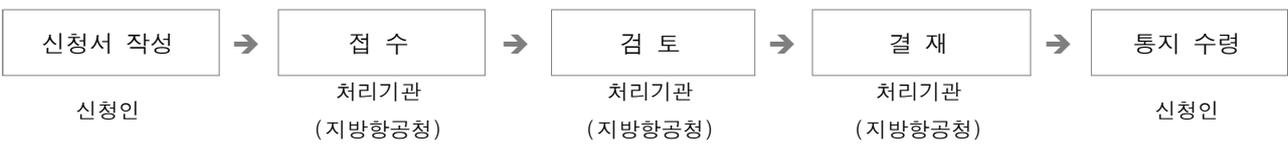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칭		
위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종		공사(사업)기간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민원사무 안내

-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20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의 설계도서대로 완성여부
- 비행장시설 시공상태, 기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별지 제8호서식 보고서
- ② 준공조서
- ③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 ④ 시공품질검사명세서
- 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5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공항시설법 제60조(항공정책실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에 의거 납부)

공사준공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보고인 (사업 시행자)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적(m ²)	
	사업 내용	사업비	
	사업시행기간	사업완료일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귀하

37 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

1. 민원사무 안내

- 비행장설치자가 비행장의 사용을 휴지, 폐지, 사용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33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행장시설 사용재개 승인의 상충성 여부(이상유무)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비행장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 승인신청서 1부
- ② 사유 및 시기(기간)을 적은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15일 승인 사항(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38 비행장설치자 지위승계 통보

1. 민원사무 안내

- 비행장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비행장설치자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2조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5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위승계 자격 심사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승 계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설치허가일	승계시기	
승계의 조건		

「공항시설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관리·운영자), 「공항시설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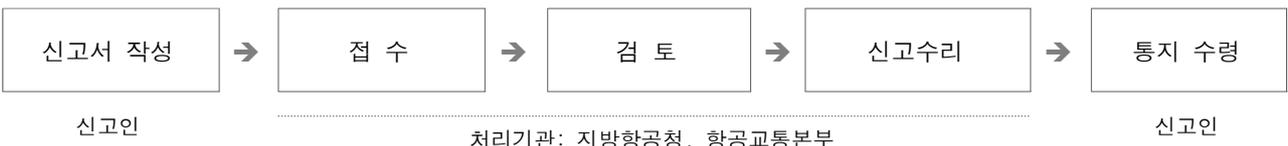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9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6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 제6조에 의한 저촉여부 검토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항시설로서의 시각적 환경 및 기존 공항시설과의 조화, 기능적 효율성, 진입도로, 급·배수, 오·하수, 가스시설 설치계획검토 → 기존시설과의 연계 및 운용방안 검토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검토
- 투자방안 검토 : 기부채납, 관리환, 선투자, 민자유치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1부
- ②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1부
- ③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 포함)서 1부
- ④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 ⑤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4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신청인	부산지방항공청	처 리 내 용
	<div data-bbox="373 434 552 55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100px;">업무협의</div>	<p>* 업무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또는 과 - 공항공사
<div data-bbox="188 1339 331 14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px;">통지수령</div>	<div data-bbox="373 1339 552 14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100px;">허가</div>	<p>* 시행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공항공사에 통보
처리기간 : 40일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칭		
위치		
업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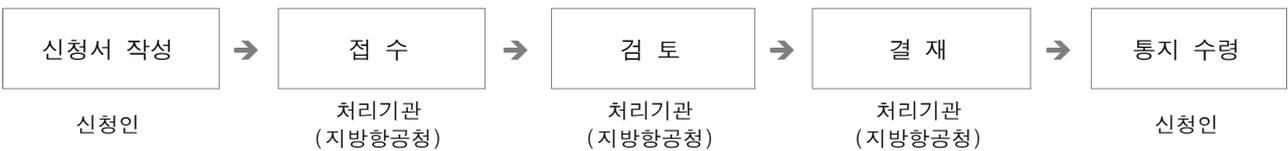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0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임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9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상의 저촉여부 검토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개최(공항시설법 제5조, 영 제10조)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항시설로서의 시각적 환경 및 기존공항시설과의 조화. 기능적 효율성, 오·하수처리시설, 급·배수시설, 가스시설 설치계획 검토→ 기존시설과의 연계 및 운용방안 검토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검토
- 투자방안 검토(기부채납, 관리환, 선투자, 민자유치 등)
- 공항시설법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각호규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공사설명서,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1부
- ③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④ 공사설명서 1부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⑤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1부
- ⑥ 공사에정표 1부
- ⑦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 1부
- ⑧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
- ⑨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
- ⑩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 ⑫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⑬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⑭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⑮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⑯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4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5. 세부 업무흐름도

신청인	부산지방항공청	처 리 내 용
승인신청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사업 시행자(시행허가를 받은 자) *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공사설명서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공사설명서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공사에정표 1부 - 자금계획서 -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 -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 -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변경 승인신청에 한함)

신청인	부산지방항공청	처 리 내 용
<div data-bbox="167 1742 331 20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통지수령</div>	<div data-bbox="375 1086 555 118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토</div> <div data-bbox="375 1243 555 149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의 (대상사업)</div> <div data-bbox="375 1552 555 170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무협의를</div> <div data-bbox="375 1742 555 20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승인 및 고시.통보</div>	<p>※ 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신청시 일괄신고 가능</p> <p>※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면적 축소 - 1천억원(낙찰차액 및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의 범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 설비 또는 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의 변경 <p>* 붙임 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등 -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및 운용방안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 투자방안(기부채납, 관리환, 선투자, 민자유치) -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후 국가에 귀속여부 등 - 공항시설법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각호규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p>* 업무협의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 또는 과 - 소관 행정기관 - 공항공사 <p>* 승인 및 고시.통보(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규칙 제10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 신청자에게 통보 - 공항공사에 통보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칭		
위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종		공사(사업)기간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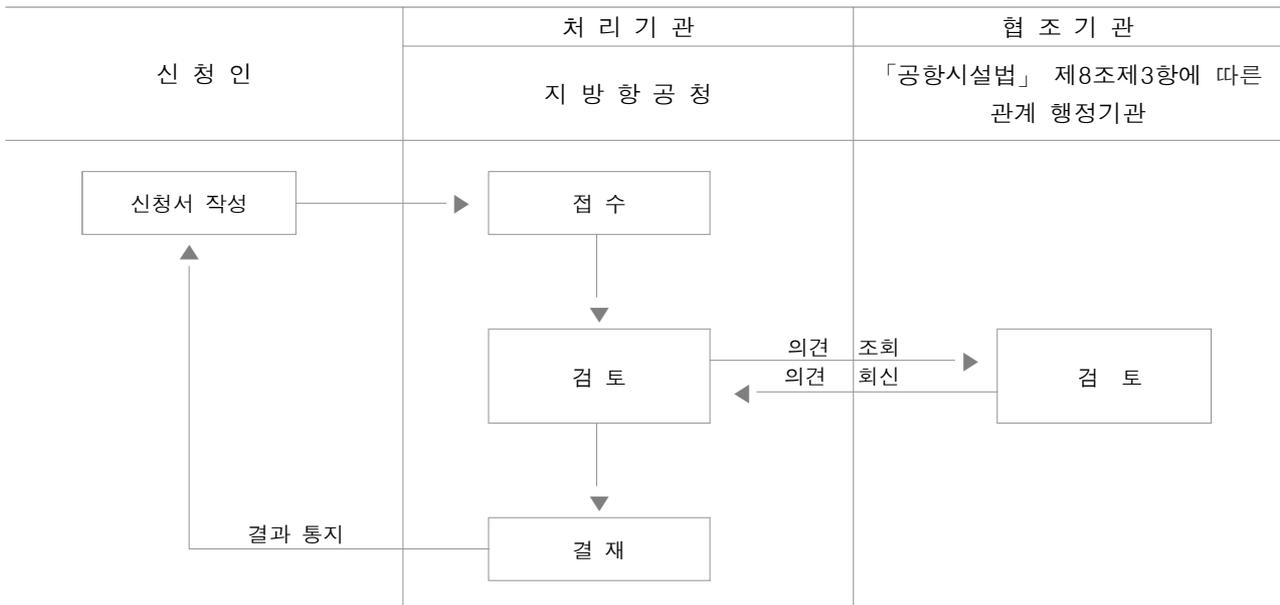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에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41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승인 받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상의 저촉여부 검토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항시설로서의 시각적 환경 및 기존 공항 시설과의 조화. 기능적 효율성 : 오·하수처리시설, 급·배수시설. 가스시설 설치 계획 검토→ 기존시설과의 연계 및 운용방안 검토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검토
- 투자방안 검토(기부채납, 관리환, 선투자, 민자유치 등)
- 공항시설법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각호규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계도면 첨부)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칭		
위치		
승인일자	착공일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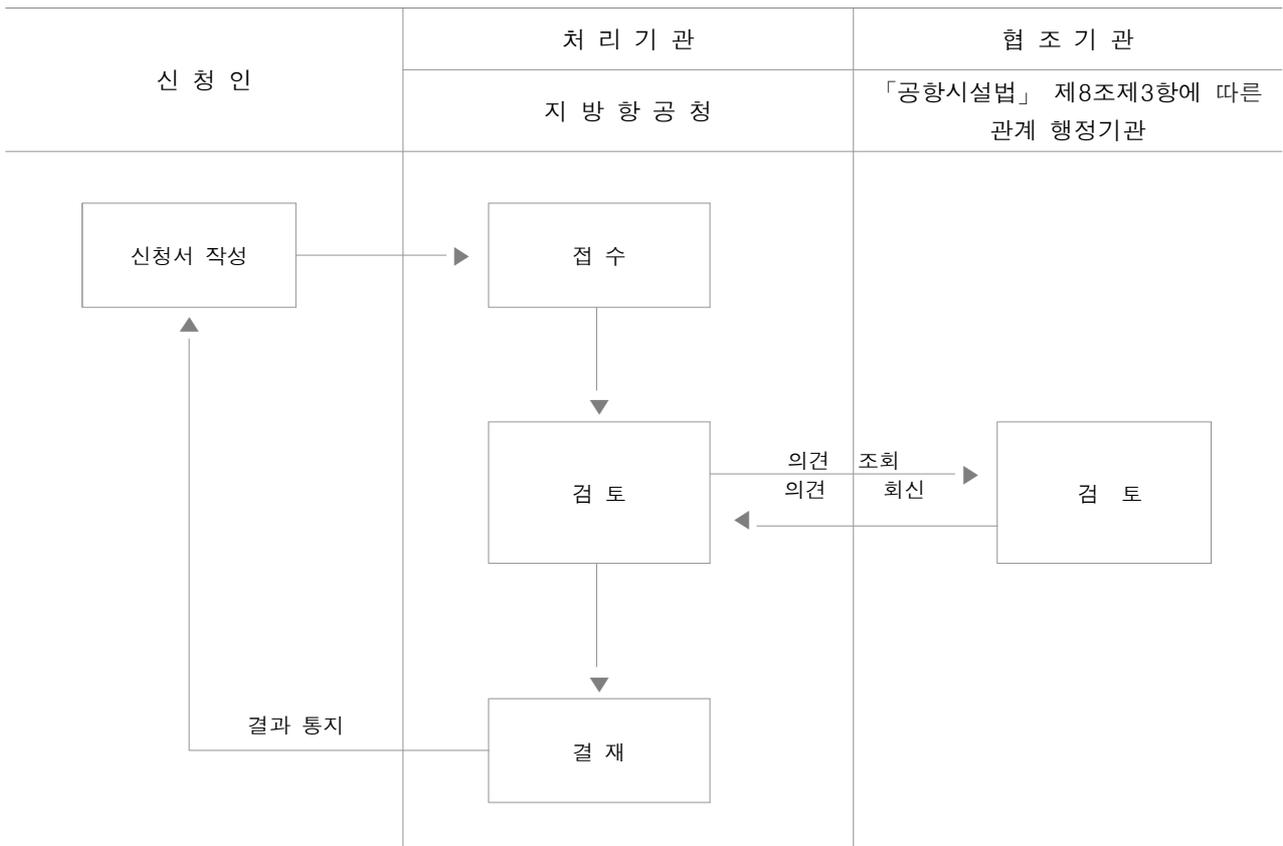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42 공항시설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1. 민원사무 안내

-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또한,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20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의 내용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검토
- 설치한 시설이 공항시설로서의 기능 및 건축물로서의 기능발휘 여부 점검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검토
- 검사결과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대로 되었을 경우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공항시설준공검사신청서 1부
- ②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부
- ③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 준공사진 또는 도면 1부
- ④ 시공품질검사명세서
-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필요한 경우만 해당)
- ⑥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5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공사준공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보고인 (사업 시행자)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적(m ²)	
	사업 내용	사업비	
	사업시행기간	사업완료일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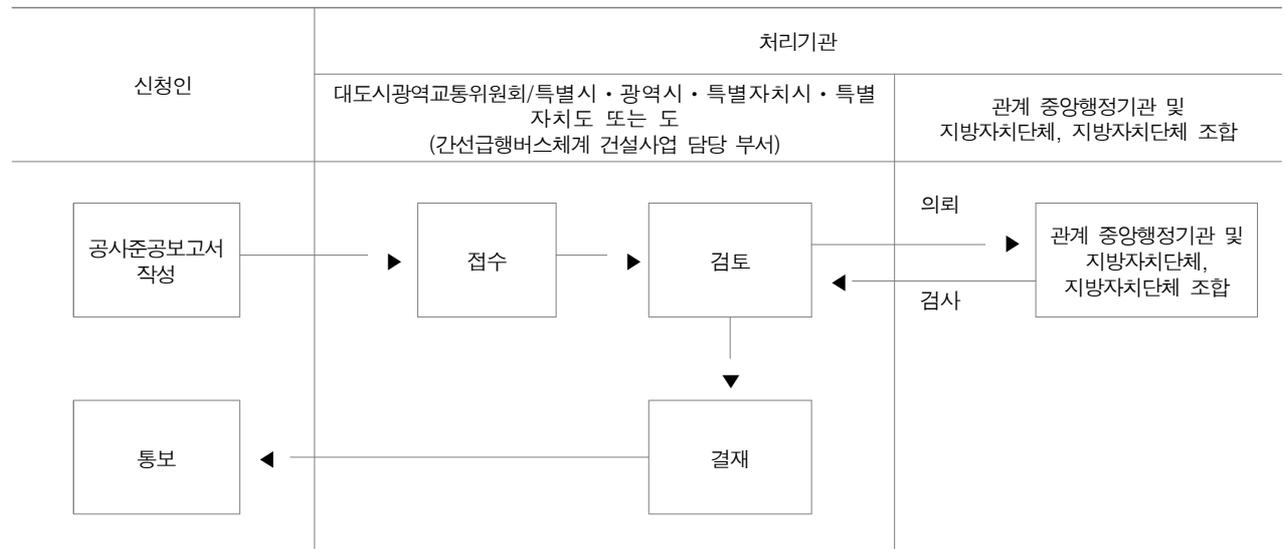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 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터널·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43 공항시설준공 전 사용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의 내용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검토
- 설치한 시설이 공항시설로서의 기능 및 가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 검사결과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대로 되었고 가사용이 가능할 경우 준공 전 사용허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공항시설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②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 ③ 시공품질검사명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44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대상물에 대하여 그 설치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36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에 적법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유무 점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도면: 항공장애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1부

③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항공장애 표시등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장애물	소재지	장애물 명칭
	좌표(WGS-84) 북위: 도(°) 분(') 초("), 동경: 도(°) 분(') 초(")	
	소재지표고 해면상: m	장애물 종류
	높이(피뢰침 등 부속구조물 포함) 지면(또는 수면)상: m, 해면상: m	장애물 크기 가로: m, 세로: m
	공항·비행장과의 관계 거리: km, 방위:	

항공장애 표시등	고광도	A형 개, B형 개	동시점광 여부
	중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	동시점광 여부
	저광도	A형 개, B형 개, C형 개, D형 개, E형 개	동시점광 여부

항공장애 주간표지	도색 [], 표지구 [], 깃발 []	도색등분
		모양 및 색상
		기타 표지물

설치연월일	
-------	--

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	------

「공항시설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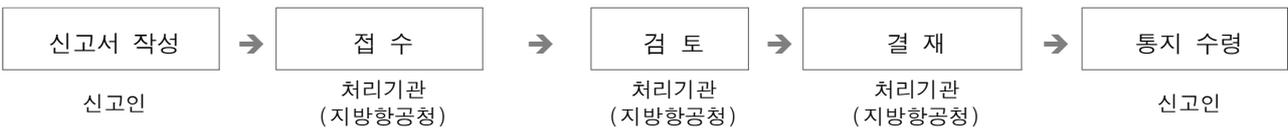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1부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5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등화시설(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3조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치하고자 하는 항공등화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 설치계획검토
- 기존시설과의 연계 및 운용방안 검토
-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수요예측, 시설의 적정성 및 필요시 확장성 검토
- 투자방안 검토 : 기부채납, 관리환, 선투자, 민자유치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1부
- ③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1부
- ④ 자금조달계획서 1부
- ⑤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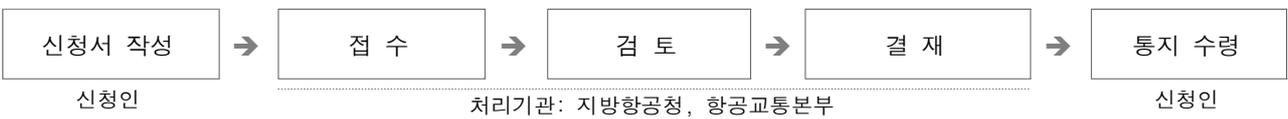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6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등화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4조 제3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여부
 - 시방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설계예산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
 - 수량산출서의 수량산출 및 품목의 적정성 여부
- 기타 심사기준
 - 일반 전기기술기준의 적합성
 -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물 검토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1부
- ② 자금조달계획 1부
- ③ 사업 시행기간 1부
- ④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1부
- 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⑥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⑦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 ⑧ 공사에정표
- ⑨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⑩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⑪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⑫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 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⑮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 ⑯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사업)의 명칭		
위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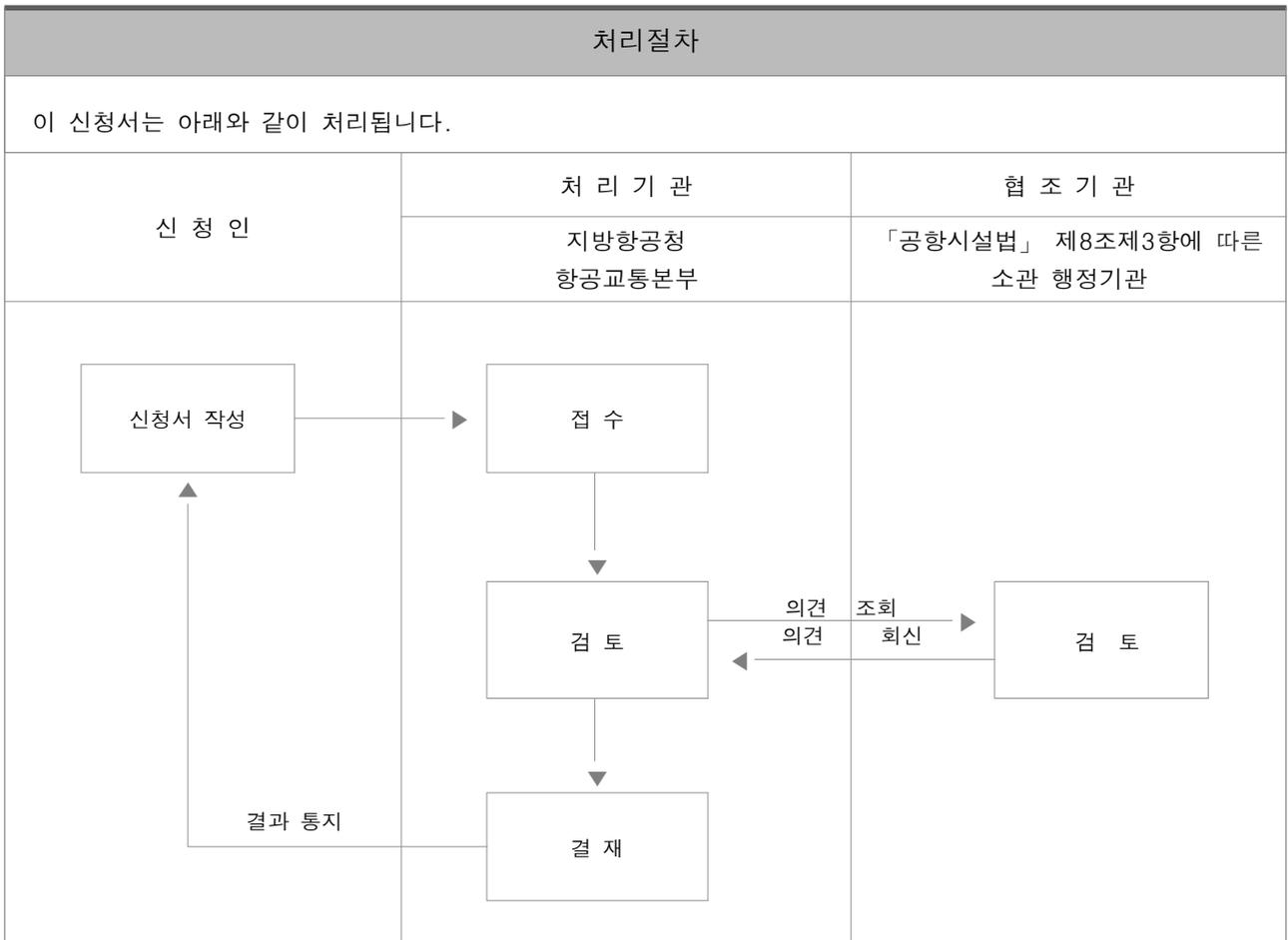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7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등화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5조 제1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실시계획승인내용과 준공시설의 일치여부
 -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 기타 심사기준
 - 준공사진 및 일반서류 검토
 - 시설물의 시운전 및 시설 상태 적합성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완성검사조서 1부
- ②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준공사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공일		완공일

설치허가연월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48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등화시설의 완성검사를 한 때에 한해 당해 항공등화시설의 사용의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완성검사와 사용개시 신고의 상충성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부
- ②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즉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49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등화시설설치자 및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6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등의 규격 또는 광도의 적정성 여부
 - 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적정성 여부
 - 항공등화시설 운용시간 적정성 여부
- 기타 심사기준
 - 일반 전기기술기준의 적합성
 - 토지소유 및 주변지형의 장애물 검토
 - 시설변경사유의 적합성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시설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②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1부
- ③ 변경 사유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설치허가연월일		
착공일	완성검사 합 격 일	

「공항시설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 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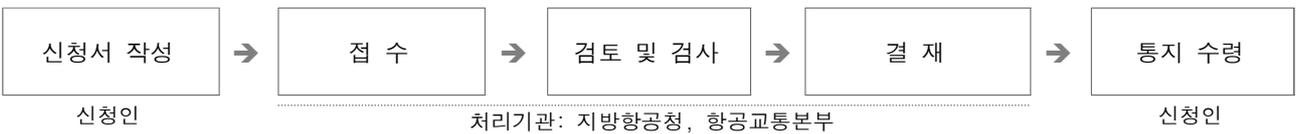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0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유선통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3조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5·16과 관련고시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
 - 설계도면의 도면작성, 적정성 여부
 - 지방서의 지방사항 적정여부
 - 설계예산서 예산규모 적정성 여부
 - 수량산출서의 수량산출 및 품목의 적정성
- 기타 심사기준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1부
- ②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1부
- ③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1부
- ④ 자금조달계획서 1부
- ⑤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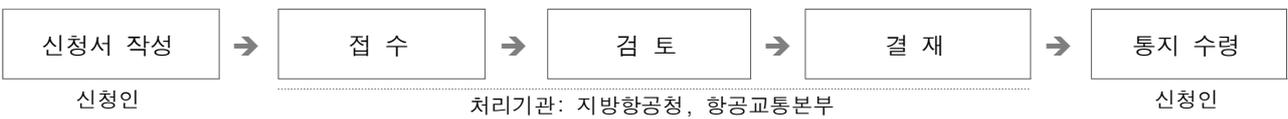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합니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

1. 민원사무 안내

-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5조 제1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당초설계와 준공시설의 일치여부
 - 설계변경도서의 변경 및 정리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5·16과 관련고시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
- 기타 심사기준
 - 준공사진 및 일반서류 검토
 - 시설물의 시운전 및 기술검사 상태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완성검사조서1부
- ②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③ 준공사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착공일	완공일	

설치허가연월일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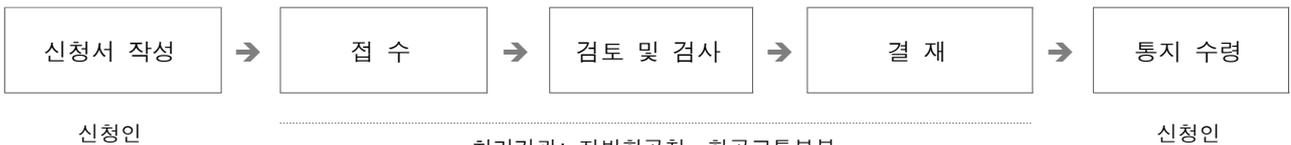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해당 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52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 통보

1. 민원사무 안내

- 항행안전시설 설치자가 항해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46조 제1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설계도서 심사기준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5·16과 관련고시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
 - 설계도면의 도면작성, 적정성 여부
- 기타 심사기준
 - 시설변경사유 및 효율성
 - 기타 첨부 서류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② 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1부
- ③ 변경 사유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 칭		
위 치		
설치허가연월일		
착공일	완성검사 합 격 일	

「공항시설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 항공등화시설 [] 항행 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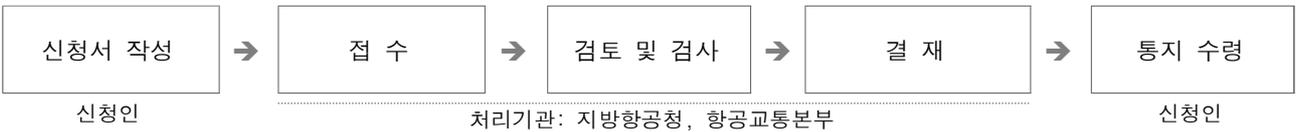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 사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3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 민원사무 안내

-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가 당해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의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행안전무선시설 완성검사와 사용개시 신고의 상충성 여부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즉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54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

1. 민원사무 안내

- 항행안전시설 설치자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폐지 또는 사용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33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사유의 적정성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 1부
- ②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단, 승인사항은 3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55 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 통보

1. 민원사무 안내

-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공항시설법 제51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위승계사항의 서류 확인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1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승 계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위 치		
설치허가일		승계시기
승계의 조건		

「공항시설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관리·운영자), 「공항시설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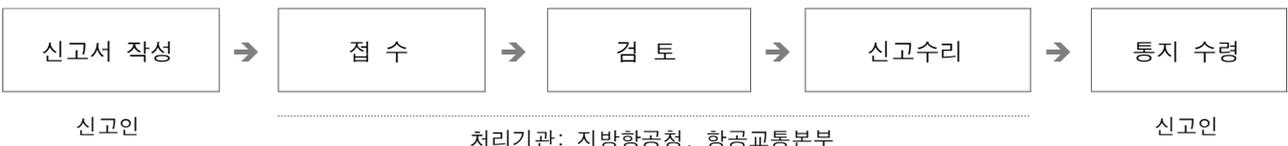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승계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하는 사항과 승계의 조건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Chapter

V

항공관제국

56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1. 민원사무 안내

-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고자 할 때 지방 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2.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제47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2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 구비서류 적법성 검토

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신청서 1부
- ② 연습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
- ③ 연습생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과	처 리 기 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2일

다. 재발급 수수료 납부 : 없음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연습희망 기간	20 ~ 20	

「항공안전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항공교통관제사 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항공신체검사증명서	

